

#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 현안분석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규제조치  
통합경제와 인구이동: 현황 및 이론  
주요국의 민간연금에 대한 조세제도

## ● 정책연구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외

## ● 정책흐름

1996 회계연도 정부결산 외

## ●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관련 통계(Ⅱ)

C O N T E N T S

권두칼럼

- 2 국제화·세계화는 경제정책의 자주성 상실인가? /김종만

현안분석

- 6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규제조치 /정영현·황현리  
23 통합경제와 인구이동 : 현황 및 이론 /김정훈  
41 주요국의 민간연금에 대한 조세제도 /전영준

정책연구

- 56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  
59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관한 연구 /박대근·이창용  
62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

정책흐름

- 67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 개최  
73 1996 회계연도 정부결산  
83 재정자금 배정제도 개선  
8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89 1997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영(안)  
96 1998년 예산요구 현황

재정통계

- 104 특별소비세 관련 통계(II)

# 국제화 · 세계화는 경제정책의 자주성 상실인가?

김종만/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언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필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반도체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였고,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본 엔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점차 수출경기가 회복되고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경기도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답변을 들은 후 과거 재무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담당한 경험이 있으신 어떤 분이 “결국 우리나라의 경기가 국제경제의 상황변동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야기구만!”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국제화 · 세계화에 따라 개별국가가 자국의 경제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점차 축소되고 다른 나라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해진다는 말을 하였다.



작년 6월부터 경상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특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부처들에 비상이 걸렸던 기억이 난다. 재정경제원을 비롯하여 통상산업부 등 모든 경제부처와 한국은행의 담당자들, 대학교와 연구원의 경제학자들 및 여러 경제단체의 관계자들이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공리하고

검토한 결과 도달한 결론은 “경상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신통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원유 가격의 하락 및 엔화 가치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점차 개선되고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시장의 상황변동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경상수지의 급격한 악화와 같은 중요한 경제문제에 대하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별 뾰족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국제시장의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무력감과 함께 자괴감마저 느낄지 모른다. 아울러 경제정책의 무용론과

대부분 나라들의 경제는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더라도 국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함께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자조적인 탄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인 것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다른 나라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북한, 쿠바 등 경제적으로 고립된 나라들이나 소득수준이 아주 낮은 후진국들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 나라들의 경제는 크든 작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변동은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국에서 일어나는 변동은 국내경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국제경제의 변동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들은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독일 등 막대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신들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제시장의 상황변동에 수동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요 현실이다.

따지고 보면 국제적인 경제교류다, 경제협력이다 하는 것들로 인하여 경제의 손과 발이 서로 묶이게 되었고 그 결과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변동이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 세계를 통하여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들의 경제는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더라도 국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제의 국제화·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어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의 자주성은 점차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세계화가 추진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는 경제정책으로는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아예 포기하고 경제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제경제의 상황변동에 따라 해결되도록 맡겨 둘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국제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변동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어진 국제경제의 여건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 경제가 국제화·세계화됨에 따라 경제정책도 국제화되고 세계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찌 되었건, 필자는 반도체의 국제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원유가격이 더욱 하락함과 동시에 엔화강세가 지속되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국내경기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분들이 국제경제의 상황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경영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란다. 그 결과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먹여야 할 입(人口)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밥상머리에서 반찬투정을 할 수 있는 태평성대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KDI**

# 현안분석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규제조치 / 정영현 · 황현리

통합경제와 인구이동 : 현황 및 이론 / 김정훈

주요국의 민간연금에 대한 조세제도 / 전영준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규제조치

정 영 현/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황 현 리/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자본이동의 자유화, 금융거래의 국제화 등은 국제적으로 자금세탁 행위를 훨씬 수월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I. 서론

최근 세계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자본시장의 통합화이다. 이로 인해 거액의 자금이 국경을 초월하여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투자대상을 찾아 자유롭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본이동의 자유화, 금융거래의 국제화는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국제적으로 자금세탁 행위를 훨씬 수월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및 감독완화로 거액의 자본이 일시에 이동하여 합법적인 자본흐름에 쉽게 합류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많은 국가들이 외국자본을 유입하기 위해 자본출처 조사를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도 불법경제(마약, 밀수, 뇌물)의 축소를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마약거래, 탈법정치자금, 불법무기거래 등 각종 불법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금융기관 등 제도금융권을 통해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금세탁은

• 이 원고는 필자들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 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불법행위로부터 파생한 수익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취득원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다시 통합하여 외견상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본의 흐름이 용이한 현 시점에서 진정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바,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약물범죄의 방지와 자금세탁의 규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와 사회의 음성적 거래에 대한 해결방안을 금융실명제에서만 찾고 있어 금융거래의 불편함,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 및 이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오히려 금융기관의 이용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7일에는 대법원에서 차명거래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차명거래 등 불법자금거래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말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으로서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과 경제·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였다.

본고는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는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및 개별 국가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률 제정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국제적인 자금세탁은 주로 국가간의 규제 및 사법권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근본적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등을 통한 국제적인 공조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자금세탁을 규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다른 국가들에 대해 부(-)의 외부효과를 주게 되므로 국제적인 정책협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는 자금세탁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종 국제협약 등을 체결하여 개별 국가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은 각국의 국내법에

진정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바,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  
는 자금세탁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종 국제협약 등을  
체결하였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은 국제협약 등의 영향을 받아 자금세탁  
규제에 관한 조치를 국내법으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국제협약 등이 체결되기  
전에 독자적으로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기구 등이 제안 또  
는 권고한 자금세탁 규제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비엔나 협약(1988년)

1988년 12월 마약 등 약물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UN 주도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협약(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일명 비엔나협약)」이 체  
결되었는데 이 협약에는 서명국가들이 마약밀매 자금의 세탁행위를 규제하도  
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약거래 방지에 관해 전세계의 규범이 되고  
있는 이 협약에는 1996년 12월말 현재 138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5년 12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협  
약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 협약 중 자금세탁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은 국내입  
법을 통해 마약밀매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동 행위  
를 '범죄인 인도(extradition)' 대상에 포함시켜 자금세탁 관련 범죄자의 국가  
간 인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요건을 단순화하도록 하였  
다.

둘째, 사법당국에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밀매에 따른 수익금, 또는 동 수  
익금으로 구입한 재산을 몰수할 권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거래기록이나 장  
부를 열람·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셋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중요한바, 협약 당사국은  
마약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범죄의 수사, 소추 등의 사법절차에 상호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 2. 바젤성명(1988년)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도 금융시장이

범죄와 관련될 경우 일반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바젤성명 (Statement of the Principles on Prevention of Criminal Use of the Bank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 Laundering)을 발표하여 회원국 은행이 이를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

동 성명에서는 은행제도의 범죄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며 자금세탁 관련 거래에 대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고, 만약 예금이 범죄수익이거나 거래 행위가 범죄행위 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내부통제, 직원연수, 고객 신분확인 및 거래기록유지 등에 관한 별도 절차를 마련·운용하며, 고객 비밀보장에 관한 국내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사법당국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ATF 보고서는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법 제도의 개선,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국제사법공조의 증진 등을 권고하고 있다.

### 3. FATF 보고서(1990년)

1989년 G-7 파리회담에서 마약자금세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OECD 산하에 결성된 FATF<sup>1)</sup>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90년 4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규제를 위한 40개 항목의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주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법 제도의 개선,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국제사법공조의 증진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은 자금세탁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며, 또한 자금세탁 규제대상을 마약 관련 자금에만 한정하지 않고 처벌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각국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자금추적을 위한 제도를 개발하고 마약 관련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를 보고하도록 하며, 특히 금융기관 직원들이 법적 책임부담 없이 의심스런 거래를 성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은행비밀보호법의 규정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시 반드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익명 또는 가명계좌의 개설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융거래 관련 기록은 최소한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회원은 OECD 가맹국, 홍콩, 싱가포르, EC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이다.

EU는 역내 자본 자유화 이후 우려되는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 규제 관련지침을 제정하였다.

셋째, 각국의 사법당국,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은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몰수·범인 인도 등과 관련된 국가간의 사법공조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4. EU의 자금세탁관련 지침(1991년)

EU는 역내 자본자유화 이후 우려되는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991년 6월 자금세탁 규제 관련지침(Directive on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 Laundering)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 대해 1993년 1월까지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FATF 보고서 등 다른 국제협약에서와 같이 회원국에 대해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시 1만 5천ECU 이상의 거래, 제3자를 위한 거래에 대해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내역, 고객확인 기록 등 관련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법당국에 협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은 은행비밀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면책지침을 두도록 하고 있다.

#### Ⅲ. 주요국의 자금세탁 규제조치

국가별 자금세탁 규제조치는 각국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은 별도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한 반면 일본은 마약규제법에서, 스위스·이탈리아 등은 형법에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여 이를 처벌하고 자금세탁에 관련된 수익 등을 몰수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각국의 자금세탁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미국

###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미국에서 자금세탁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지만 이미 1970년에 마약밀매 근절을 위해 제정된 현금 및 외환거래보고법(일명 은행비밀법)에서 자금세탁 규제를 명문화하였다. 동 법률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3천달러 이상 송금시 실명을 확인하고 동일인의 1일 현금거래(예금, 인출, 송금, 환전 등)가 1만달러 이상인 경우 그 내역을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금융기관 및 카지노 등은 거래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하며, 필요시 국가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동일인의 1일 현금거래가 1만달러 이상인 경우 그 내역을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미국의 현금거래보고제도

	보고의무자	대상한도액	보고기관	보고시기	기록보존
국내현금거래보고	금융기관	1만달러 이상 <sup>1)</sup>	국세청	거래시부터 15일 이내	5년
국제적 현금이송보고	해외송금자, 해외로부터의 현금수령자	1만달러 이상	세관	거래시	
외국금융계좌보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총액 1만달러 이상	재무부	연차	

주: 1) 소규모 거래의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있음.

미국은 이러한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다양한 형사 및 민사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비밀법상에 규정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기관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사원, 대표이사, 임원, 사용인 등이 모두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벌은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고, 민사벌<sup>2)</sup>은 고의적인 경우 2만 5천달러 이하, 과실범의 경우 500달러 이하의 민사금전벌이 부과된다.

반면 다른 연방법률과 관련이 있거나 12개월 이내에 10만달러 이상이 관련

2) 민사벌은 그 범죄가 증거우세에 의해 입증되면 부과되는 것이다.

미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분산거래나 외국에의 전신송금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을 두고 있다.

된 기타 불법활동과 연관되어 고의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달러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형에 처해진다.

또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기관 등이 약물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은행감독기관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한 분산거래나 외국에의 전신송금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을 두고 있다.

#### 나.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처벌

미국은 1986년 「자금세탁규제법」을 제정하여 자금세탁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자금세탁이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자금의 거래를 통해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자금의 성격, 취득원 등을 은폐·위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률에 의해 자금세탁 행위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세탁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가운데 고액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게 되고 자산은 모두 몰수된다.

## 2. 일본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물문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았고 경제가 현금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금세탁규제안 마련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988년 비엔나 협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규제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스위스 등이 규제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자 이에 영향을 받아 자금세탁 규제대책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sup>3)</sup>.

####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1990년 일본의 대장성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단자사 등 각 금융기관에 「마약 등 약물의 불법거래에 수반된 자금세탁의 방지에 관하여」를 통달하였다. 이 통달은 마약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의무, 거래 등 관련기록의 보존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3) 『일본경제신문』, 1989. 11. 30.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은 3천만엔 이상의 현금거래와 5백만엔을 넘는 대외현금거래, 여행수표의 환전거래 등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등에 기초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이러한 본인확인 상황을 반년마다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은 고객의 본인확인에 대한 기록, 계좌에 대한 기록 등 국내외 거래에 관한 모든 필요한 기록을 적어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또한 마약 등 약물의 불법거래 단속에 있어서 법원, 검찰청, 경찰, 세관 등 약물의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집행기관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은 1991년에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일명 마약신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도를 신설하였다.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인정할 경우 신속히 문서로 각 주무대신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거래란 정령(政令)에서 정한 업무에 있어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당해 업무와 관련한 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수익 등 은닉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실제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도록 촉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어떠한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인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벌칙이 없는 의무규정이 어느 정도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반시의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처벌

일본은 국제적 협력하에 마약관련 자금세탁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1991년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자금세탁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불법수익 등 은닉죄(제9조)」와 「불법수익 등 수수죄(제10조)」를 신설하였는데 여기서 '불법수익 등'이란 불법수익(약물범죄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약물범죄의 보수로서 취득한 재산 등을 지칭), 불법수익에서 유래하는 재산 그리고 이러한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혼합된 재산 등을 말한다. 자금세탁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내용은 <표

1990년 일본 대장성은 각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의무, 거래 등 관련기록의 보존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통달하였다.

호주의 「현금거래보고법」은 의심스러운 거래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고 그 관련 기록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와 같다.

〈표 2〉 일본의 자금세탁 행위의 처벌

	구성요건	처 벌
불법수익 등 은닉죄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불법수익의 발생원인,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는 등 약물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형
불법수익 등 수수죄	유·무상을 불문하고 불법수익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자기 것과 같은 지배관계를 갖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형

### 3. 호주

####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1988년에 제정된 「현금거래보고법」은 의심스러운 거래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고 그 관련 기록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3〉 참조). 동법에 의해 모든 새로운 계좌는 서명자의 확인이 요구되며,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된다.

또한 현금취급자(금융기관, 현금수송업자 등)는 전신에 의한 국제자금거래 그리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거래에 관한 정보가 탈세, 연방범죄 등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스러운 경우 이를 호주거래보고센터(AUSTRAC)에 보고하도록

〈표 3〉 호주의 금융거래보고제도

	보고의무자	보고대상 한도	보고기관	보고시기	기록보존 보존의무
국내현금 거래	금융기관	1만호주 달러 이상	호주거래보고센터 (AUSTRAC)	거래시	7년
국외이송 및 국내반입	외화를 국외이송 또는 국내반입한 자 국외로부터 송금받은 자	5천호주 달러 이상	세관	거래시	-

하고 있다.

나. 자금세탁 행위의 처벌

호주는 1987년 연방의 「범죄수익법」을 제정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동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죄」와 「범죄수익의 의심이 있는 재산 등의 소지죄」를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죄」는 범죄수익인 금전 및 기타 재산이 불법활동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유래하거나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범죄수익인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수취, 소지, 은닉, 처분 또는 호주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이러한 자금세탁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연인의 경우 20만호주달러 이하의 벌금,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60만호주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수익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전 및 기타재산을 수취, 소지, 은닉, 처분 또는 호주내에 반입하는 경우 「범죄수익의 의심이 있는 재산 등의 소지죄」가 성립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연인의 경우 5천호주달러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1만 5천호주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4. 캐나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캐나다에서는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약물거래에 의해 발생하여 세탁된다<sup>4)</sup>. 캐나다에서 이렇게 많은 자금이 세탁되고 있는 것은 캐나다의 은행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은행비밀을 엄격히 보호해 왔고 또한 그동안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이나 현금거래 보고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 행위가 문제시됨에 따라 1990년 10월 「범죄수익법(자금세탁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은행비밀보장법(CTR)과 같은 보고의무를 규정하였다. 즉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환전상 등은 1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현금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기록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달러 이하의

캐나다에서 거액의 자금이 세탁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은행비밀을 엄격히 보호해 왔고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이나 현금거래 보고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4) 이병기, 『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참조.

캐나다 자금세탁법의 특징은 적용대상이 약물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범죄, 특정약물범죄 등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금융기관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규정은 없다.

나. 자금세탁 행위의 처벌

캐나다는 1989년 형법전의 「식품 및 약물법」과 「마약단속법」을 개정하여 범죄수익세탁죄, 마약수익세탁죄, 마약수익소지죄 등을 신설,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로 금지하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도록 입법화하였다. 이처럼 캐나다 자금세탁법의 특징은 적용대상이 약물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범죄, 특정약물범죄 등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수익세탁죄와 마약수익세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마약수익소지죄에 대해서는 그 재산 또는 수익이 1천캐나다달러가 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천캐나다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5. 독일

독일은 통일을 전후하여 자금세탁이 급증하고 있다. 콜 수상이 내각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매년 800억달러의 자금이 독일에서 세탁되고 있는데 이처럼 1980년대 후반 이후 많은 자금이 독일에서 세탁되고 있는 이유는 과거 자금세탁이 많이 행해지던 스위스가 최근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그 자금이 독일로 흘러들어 온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1992년 형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의 신원확인 의무 및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은 계좌개설시뿐만 아니라 5만마르크 이상의 현금 또는 3만마르크 이상의 외국화폐 매매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러한 고객 신원확인 과 관련된 자료는 6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분산거래와 마찬가지로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분할

하여 입금하는 경우 이를 전체적으로 합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고 개별거래 사이에 결합관계가 명백할 때에는 역시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행위를 암시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관할 형사소추기관에 신고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기준은 법안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1993년에 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금융기관, 신탁자산관리자 등은 종래의 5만마르크에서 2만마르크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의 출납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또한 거래 상대방이 실거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자금세탁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금융기관, 신탁자산 관리자 등은 2만마르크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의 출납시 인적사항과 거래 상대방이 실거래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나. 자금세탁 행위의 처벌

독일은 1992년에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 제261조에 삽입하고 「조직범죄의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 형태의 투쟁에 관한 법률(일명 조직범죄대책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마약, 횡령, 사기, 뇌물, 조직범죄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 혐의의 자금세탁죄, 불법재산취득죄 등 두 개의 범죄유형으로 나누어 제재하고 있다. 혐의의 자금세탁죄는 범죄에서 유래하는 대상물을 은닉, 출처위장, 출처의 수사·발견·박탈·몰수·보전을 방해 또는 위협케 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불법재산취득죄는 범죄에서 유래하는 재산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그 출처를 알면서 보관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처분한 경우 성립한다. 이러한 자금세탁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범죄행위와 관련된 대상물은 압수 또는 몰수된다.

## 6.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마피아를 비롯한 조직범죄의 근원지로서, 특히 자금세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탈리아의 통계기관인 Censis에 의하면 매년 불

이탈리아에서는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행위를 마피아형 조직범죄 규제의 일환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법적인 방법으로 약 750억달러의 자금이 이탈리아에서 세탁되고 있다고 추산되는데 범죄조직들은 주로 약물거래를 통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탈리아에서는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행위를 마피아형 조직범죄 규제의 일환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처럼 약물범죄로 인한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게 된 것은 1988년 비엔나 협약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이탈리아는 조직범죄자나 약물범죄자들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1990년에 「마피아형범죄방지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고객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의해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포함한 공공기관, 금융·증권업자 등은 2천만리라(동일한 거래를 수회에 걸쳐 행한 경우에는 그 합계액)를 초과하는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및 1천만리라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1년 7월에 「자금세탁규제법」을 제정하여 고액의 현금이송 금지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의무를 부과하였다. 즉 2천만리라 이상의 현금 및 지급증권의 국내의 이송은 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등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또한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송금액의 5~25%의 과료가 부과된다.

금융기관은 거래의 대상이 된 현금, 재물 및 기타 이익이 자금세탁죄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위 보고와 보관되어 있는 기록을 참고하여 이를 지방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를 한 금융기관은 고객의 비밀준수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거래액의 5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또는 2천만리라 이하의 과료가 부과된다.

#### 나. 자금세탁 행위의 처벌

이탈리아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마피아형범죄방지법」에 의해 자금세탁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마련되었다. 동법은 자금세탁의 기준범죄 범위에 강도, 공갈, 공갈목적의 감금 외에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나 거래 등을 모두 포함시켜 범죄조직이 약물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세탁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도, 공갈, 공갈목적의 감금 또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나 거래에 관한 죄로부터 취득한 금전, 재산 및 기타 이익을 다른 금전, 재산, 기타 이익으로 전환하거나 상기의 죄로부터 얻은 금전, 재산 및 기타 이익의 동일성 확인을 방해한 자는 4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및 2백만리라 이상, 3천만리라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직범죄의 자금원을 봉쇄시키기 위해 자금세탁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불법으로 취득한 금전, 재산 및 기타 이익을 합법적인 기업을 위장하여 경제활동 또는 재정활동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 IV. 결론

자금세탁 행위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한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불법행위 자체를 은폐함으로써 건전한 국가발전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자금세탁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법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면 세금을 포탈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질서의 왜곡을 초래한다. 둘째, 불법수익이 뇌물로 제공될 경우 공직사회에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어 사회정의를 해치게 된다. 셋째, 범죄행위 자체를 은폐할 수 있게 되어 범죄억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선진 각국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국의 핵심적인 조치는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먼저 자금세탁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현금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를 관계당국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이상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막으려는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 및 규칙 등에 관한 최소한의 세계공통 기준의 설립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도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 깨끗한 정치,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하에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를 국제법으로 규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지침들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적인 성격이 강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통합이라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하에서 다른 국가들의 자금세탁 규제 강화를 이용하여 상대적 혜택을 누리려는 국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sup>5)</sup>.

따라서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금융감독 및 규칙 등에 관한 최소한의 국제적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국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KPI

5)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자금세탁의 영향과 IMF의 역할」, 1996. 11 참조.

〈표 4〉 외국의 자금세탁 규제조치

	자금세탁 규제를 위한 관련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법률	목적	자금세탁 행위자 처벌	현금거래보고제도 또는 고객확인제도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 기록 보존	금융기관 처벌
				대상한도	보고의무자	보고 기관	보고 시기			
미국	자금세탁 규제법	불법행위로 취득한 자금의 거래를 통해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자금의 성격, 취득 등을 은폐·위장하는 행위를 처벌	50만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세탁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중 고액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형	○국내 현금 거래: 1만 달러 이상 ○국제 현금 이송: 1만 달러 이상	금융기관  해외 송금 자 해외로부터의 현금수령자	국세청  세관	거래시  거래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은행감독기관에 보고; ①분산거래 ②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정보를 듣고 거래를 변경·취소한 경우 ③1만달러 이상의 은행수표를 교환하는 경우 ④외국에의 전신송금 등과 관련된 거래 등	5년	○형사벌: 25만달러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양자의 병과형 ○민사벌: 고의적인 경우 2만 5천달러 이하, 과실범의 경우 5백달러 이하
일본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마약 관련 약물 범죄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를 범죄화	○불법수익 등 은닉죄: 5년 이하의 징역, 3백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형 ○불법수익 등 수수죄: 3년 이하의 징역, 1백만엔 또는 양자의 병과형	○현금거래: 3천만엔 ○대외 현금 거래: 5백만엔 초과 시 실명확인	금융기관  대장성	  매반년	정령에서 정한 업무에 있어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당해업무와 관련한 거래 상대방이 「불법수익 등 은닉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금융기관은 문서로 주무대신에게 보고	5년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없음	
호주	범죄수익법	마약범죄, 연방법·주법·특별지역법 위반 범죄 수익의 수취·소지·은닉·처분 및 호주내의 반입 규제	○자연인: 20만호주달러 이하 벌금, 20년 이하 징역 또는 양자 병과형 ○법인: 60만호주달러 이하	○국내 현금 거래: 1만호주달러 이상 ○국외이송·국내반입: 5천호주달러 이상	현금취급자 (금융기관, 현금수송업자 등)  세관	호주거래 보고센터  세관	거래시  거래시	거래에 관한 정보가 탈세, 연방죄 등과 관련 있다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의심스러운 경우 호주거래보고센터에 보고	7년	

〈표 4〉의 계속

	자금세탁 규제를 위한 관련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법률	목적	자금세탁 행위자 처벌	현금거래보고제도 또는 고객확인제도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 기록 보존	금융기관 처벌
				대상한도	보고의무자	보고 기관	보고 시기			
캐나다	형법, 범죄 수익법	약물범죄, 조직범죄, 특정약물범죄수익의 사용·이전·수송·처분 등을 규제	10년 이하 징역형 (마약수익소지자의 경우 수익이 1천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1만캐나다달러 초과	금융기관 보험사 증권사 환전상	정부	거래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도 규정 없음	보존 의무 없음	50만캐나다달러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양자 병과형
독일	조직범죄 대책법	마약, 횡령, 사기, 뇌물, 조직범죄 등에서 유래하는 재산의 은닉, 위장, 취득, 처분 등을 규제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이상 10년이하의 자유형, 중과실의 경우: 2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현금거래 보고 의무 없음 (단, 5만마르크 이상 현금거래, 3만마르크 이상 외국화폐 매매시 고객신원 확인)	-	-	-	자금세탁 행위를 암시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할 형사소추기관에 신고	6년	-
이탈리아	마피아형 범죄 방지법	강도, 공갈 또는 공갈 목적의 감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및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의 세탁행위 처벌	4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및 2백만리라 이상, 3천만리라 이하의 벌금 (이러한 행위가 업무 수행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형을 가중)	2천만리라 이상	금융기관, 우체국 등 공공기관 및 금융·증권업자	정부	거래시	거래의 대상이 된 현금, 재물 및 기타 이익이 자금세탁죄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지방경찰본부장에 보고	5년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리라 벌금(의심스러운 거래보고의무 위반 시 거래액의 1/5 이상 1/2 이하 또는 2천만리라 이하의 과료 부과)

# 통합경제와 인구이동 : 현황 및 이론

김 정 훈/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I. 논의의 배경

1990년대 세계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1개 이상의 국가들이 통합경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이 체결된 이후로 꾸준히 유럽경제의 통합을 추진하여 왔으며 1992년에는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을 체결함으로써 마침내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탄생시켰다.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여 북미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나아가서는 북·남미에서의 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1989년 동독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서독경제와 동독경제가 통합된 통합경제가 탄생하였다.

통합경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논의는 경제통합이 통합지역내 무역과 통합지역외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 EC 및 대NAFTA 국가들과의 무역전략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APEC 및 동북아시아 경제블록의 형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경제는 이러한 현실적 측면과 함께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통합경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논의는 경제통합이 통합지역내 무역과 통합지역외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통합경제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관찰하고 통일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끌고 있다. 특히 유럽 및 북미에 광범위한 통합시장이 탄생하면서 국제경제학과 지역경제학(regional economics)의 유사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1980년대에 전통적 무역이론과 산업조직론을 접합하여 신무역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Paul Krugman이 1990년대에 들어서서 지역경제학 또는 지리경제학(geographical economics)을 무역이론에 접합시키고 있다는 점은 이와 같은 학문적 조류를 반영하고 있다<sup>1)</sup>.

현실적 그리고 이론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통합경제가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우리나라 역시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같은 통합경제 체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경제가 통합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합경제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통합경제에 대한 이론적 발전이 흥미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유럽연맹 및 NAFTA의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재정·금융 정책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독립적 지위를 포기하고 연방제하의 지방정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론의 교과서에서도 국가간무역을 지역간무역이라는 관점을 통하여 설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sup>.

이러한 이론적 논의의 부산물은 지역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간 인구이동 또는 인구집중의 문제가 보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의 저변에는 지역경제력의 격차 및 서울·경기 일극화가 항상 문제의 핵심으로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경제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통합경제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논의가 우리나라의 통일재정 및 지방재정에 시사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이를 정리 및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경제에 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통합경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990년 이후의 Paul Krugman의 저서 및 논문을 보면 그의 학문적 관심이 지리학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 1991, pp. 483~499; *Geography and Trade*, Cambridge: MIT Press, 1991; "First Nature, Second Nature, and Metropolitan Locatio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3, 1993, pp. 129~144; *Development, Geography, and Economic Theory*, Ohlin Lectures No. 6, Bradford Books, 1995; *The Self-Organizing Economy*, Cambridge: Blackwell, 1996 등.

## II. 통합경제의 개요 및 특징

### 1. 통합경제의 개요

통합경제는 통합시장(integrated market)이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유형은 지역 및 역사성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탄생·발전하고 있는 통합경제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가경제도 통합경제의 일종이라는 점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미국은 여러 주정부들이 상당히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에는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방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미연방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도 통합경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통합시장을 형성할 경우 이것이 국가경제와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느냐가 통합경제의 통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편리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가. 통일독일

독일의 통일은 1989년 9월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는데,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1990년 8월 통일협약이 조인되었고 동년 10월 통일독일이 탄생하였다. 동독경제가 서독경제에 흡수되는 형태로 탄생한 통일독일은 이미 존재하였던 서독의 11개 주(Länder)에 동독의 5개 주가 합쳐진 형태를 띠고 있다. 서독과 동독간에는 상품,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며 통합전 서·동독간에 존재하였던 경제정책의 이질성은 주정부 정책의 이질성 정도로 축소되었다. 지역간 경제력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보장한 독일형 통합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간 인구이동이 통일독일의 노동·금융 및 복지정책에 결정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 나. 유럽연맹

서유럽 6개국(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은

독일형 통합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간 인구이동이 통일독일의 노동·금융 및 복지정책에 결정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2) P. Krugman and M. Obstfeld, *International Economics*, Harper & Collins, 1994의 제8장은 지역경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첫번째 소제목이 "국가란 무엇인가?"로 되어 있다. 이 장은 주로 국경보다는 지리적 접근성이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소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북미의 통합경제는 유럽의 통합경제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며 이는 NAFTA의 인구이동에 관한 조약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1957년 로마조약을 체결하여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 창설하였다. 또한 서유럽 8개국(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갈, 핀란드)은 1960년 스톡홀름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을 창설하였다. 그후 EEC는 12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게 되었는데,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1973년, 그리스가 1981년,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986년에 각각 EEC에 가입하였다.

EEC는 1957년 로마조약 체결 당시부터 유럽에서의 단일시장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상품, 자본 그리고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법률상(de jure)으로는 보장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de facto)는 많은 제약이 존재하였다. 특히 로마조약의 제48조 및 제51조는 외국인이 회원국 국민일 경우 취업의 자유 및 사회보장혜택을 보장하고 있지만 EEC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EEC는 유럽에서의 단일시장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92년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맹조약(Treaty of European Union: TEU)을 체결하였다<sup>3)</sup>. 이 조약은 그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비관세 장벽, 다양한 입찰기준 및 품질기준 등을 과감하게 철폐하였고 회원국들간 매우 동질적인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은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늦어도 1999년까지 경제통화연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을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4)</sup>.

3) 유럽연맹조약(TEU)에는 "로마조약에서의 EEC를 EC로 부르기로 한다"라는 구절이 삽입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12개국을 지칭할 때 EC가 EEC 대신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EEC와 EFTA는 유럽연맹조약이 합의된 이후인 1992년 2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을 형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EC 및 EFTA의 19개 회원간에는 상품·용역·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또한 많은 EFTA의 국가들이 EEC가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EFTA는 EEC에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북미

유럽이 단일시장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북미에서도 또 다른 통합경제가 탄생하였다. 미국은 1988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캐나다와 체결한 바 있는데, 1992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캐나다 및 멕시코와 체결하였다.

미국이 추구하는 북미의 통합경제는 유럽의 통합경제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은 NAFTA의 인구이동에 관한 조약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NAFTA는 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허

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사업목적의 경우 일시적 입국만을 허용하고 있다. 일시적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사업 방문자 ② 무역업자 또는 투자자 ③ 전근자 ④ 사업과 관련된 전문직업인 등에 한한다.

## 2. 통합경제의 특징

여러 국가들이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시장을 형성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적어도 경제정책에 관한 한, 국가가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권(sovcreignty)이 크게 약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통합전에는 각국의 정부가 재화·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흐름을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을 통하여 쉽게 바꿀 수 있지만 통합경제가 탄생한 후에는 이와 같은 역할이 크게 제한받게 된다. 또한 금융·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항상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정책의 자율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무역의 기초단위일 때에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정치·문화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상품 및 생산요소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통합경제가 형성되면 기존의 국가정부는 지방정부로 축소되고 이들은 거의 동질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치·문화적 요인보다는 시장조건이 지역 간 무역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원배분에 있어서 통합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간의 재화·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흐름이 비교우위가 아니라 절대우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무역이론에 의하면,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이용하여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게 된다. 즉 지역간 임금격차는 상품가격의(상대적) 격차를 가져오고 바로 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경제하에서는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노동력의 이동도 자유롭기 때문에 지역간에 임금격차가 있으면 곧바로 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 지역의 생산성(임금)이 낮으면, 인구의 이탈이 발생하여 그 지역은 경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 국가내에서는 항시 관찰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경기 일극화는 바로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인구가 집중할 경우 그 지역의 생산성이 왜 향상되는가에

자원배분에 있어서 통합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간의 재화·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흐름이 절대우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이다.

정치적 격변기를 제외하고는 통합경제에 상존하는 인구이동의 요인은 복지정책, 실업수당 그리고 임금격차라고 볼 수 있다. 관해서는 최근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한 지역의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증가하고 나면, 한계주민(marginal immigrant)이 지역의 생산성에 기여한 것보다는 혼잡비용의 상승이 더 크다는 것이 지역경제학의 일반적 설명이지만,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대도시 과밀은 이와 같은 단순한 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P. Krugman은 도시집중 문제를 우연성 및 응집성(agglomeration: self-growing)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많은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Ⅲ. 인구이동의 원인 및 현황

#### 1. 인구이동의 원인

인구이동의 원인은 크게 ① 복지정책 및 임금의 격차 ② 가족 재결합 ③ 정치적 망명 ④ 난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인구이동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는 지역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서유럽의 경우 동구로부터의 난민, 정치적 망명 그리고 가족 재결합의 이유 때문에 인구이동이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정치적 망명 희망자가 매년 2~5만명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망명 신청자가 매해 10~30만명 정도가 되고 있다.

정치적 격변기를 제외하고는 통합경제에 상존하는 인구이동의 요인은 역시 복지정책, 실업수당 그리고 임금격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상이한 형태로 EC, 북미 그리고 통일독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C 국가들을 보면, EC내에서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회원국들의 경제력이 비교적 동질적이기 때문에 임금격차로 인한 인구이동이 큰 규모로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멕시코의 경우에는 노동력 이동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이 양국간 가장 중요한 경제·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통일독일의 경우, 임금격차에 따른 대대적인 인구이동을 우려하여 1:1 화폐통합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많은 찬반 논의가 뒤따랐다.<sup>5)</sup>

5) 김유찬, 『독일통일 3년에 대한 경제적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3 참고.

## 2. 인구이동의 현황

### 가. 통일독일

1989년 서독과 동독간의 장벽이 사라진 후 3년간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이주한 인구의 수는 약 1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표 1>을 보면 1989년과 1990년에 각각 약 30~40만명 정도가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10~20만명 규모로 이주가 발생하였다. 1989년초 동독의 인구가 약 1,670만명 정도였으므로 통일후 동독인구의 약 6~7% 정도가 서독으로 이주한 셈이다.

통일 당시 서독은 동독으로부터의 대량 난민유입을 크게 걱정하였지만, 전체 유입인구에서 차지하는 동독주민의 비율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표 1> 동독의 인구변화(1989~1992)

(단위 : 천명)

	1989	1990	1991	1992
인구(연초기준)	16,675	16,267	15,862	15,605
유입	5	36	65	80
유출	388	395	225	160
순변화	-383	-359	-160	-80
인구(연말기준)	16,267	15,862	15,605	15,402

자료: J. Kühn, "East German Labour Markets: Problems, Prospects and Policy," KIEP, 1992.

1989년 당시 서독의 인구수는 약 6,200만명이었으므로 100만명은 서독인구의 1.6%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인구이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는 통일독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통일 당시 서독은 동독으로부터의 대량 난민유입을 크게 걱정하였지만, 전체 유입인구에서 차지하는 동독주민의 비율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의 <표 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서독으로 유입된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1989년의 경우, 중유럽 및 동유럽으로부터 유입된 인구수가 37만명 정도로 동독으로부터 유입된 34만명을 오히려 앞지르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통일후 구동독으로부터의 이주민 수는 전체 이주민 수의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독이주민이 서독의  
노동시장이나  
서독사회의 동질성에  
미친 영향은 예상만큼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표 2〉 서독으로의 유입인구(1984~1991)

(단위 : 천명)

	10년간 평균 연유입				연도별 유입							
	'50~'59	'60~'69	'70~'79	'80~'89	'84	'85	'86	'87	'88	'89	'90	'91
독일계:												
중유럽 및 동유럽 (동독제외)	44.0	22.1	35.5	100.4	36.5	39.0	42.8	78.5	202.7	377.1	397.1	222.0
폴란드	29.2	11.1	20.3	51.6	17.5	22.1	27.2	48.4	140.2	250.3	133.9	40.1
구소련	1.4	0.9	5.7	22.6	0.9	0.5	0.8	14.5	47.6	98.1	148.0	147.3
루마니아	..	1.6	7.1	22.6	16.6	14.9	13.1	14.0	12.9	23.4	111.2	32.2
동독	220.3	61.8	14.9	58.5	41.0	24.9	26.2	19.0	39.8	343.9	381.3	..
정치적 망명자	..	..	15.6	77.6	35.3	73.8	99.7	57.4	103.1	121.3	193.1	256.1
외국인(순유입)	..	..	..	3.3	-249.2	-42.3	30.9	80.9	186.4	211.2	182.5	157.8

자료 :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3.

서독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매우 많이 유입된 국가이다. 〈표 3〉은 해외로부터의 이주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3년의 경우 약 680만명 정도가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적은 터키로서, 전체 이주자들의 30% 정도(200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전에 이미 해외로부터의 이주민들의 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동독이주민이 서독의 노동시장이나 서독사회의 동질성에 미친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나. EC

〈표 4〉에는 OECD국가들의 해외로부터의 이주민 수 및 인구 비율이 나타나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EC국가들 중 해외로부터의 이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며 프랑스와 영국 등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비율로 보았을 때에는 룩셈부르크 인구의 30%가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인구 36만명의 아주 작은 국가이고 2차대전 이후부터 베네룩스 삼국간에는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OECD국가

〈표 3〉 독일에서의 해외로부터의 이주자 비율(1988~1993)<sup>1)</sup>

(단위 : 천명)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터키	1,453.7	1,523.7	1,612.6	1,694.6	1,779.6	1,854.9	1,918.4
유고	551.6	579.1	610.5	662.7	775.1	915.6	929.6
이탈리아	499.6	508.7	519.5	552.4	560.1	557.7	563.0
그리스	25.4	274.8	293.6	320.2	336.9	345.9	352.0
폴란드	120.6	171.5	220.4	242.0	271.2	285.6	260.5
오스트리아	150.0	155.1	171.1	183.2	186.9	185.3	186.3
루마니아	14.8	17.7	21.1	60.3	92.1	167.3	162.6
크로아티아	..	..	..	..	..	..	153.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	..	..	139.1
스페인	128.8	126.4	127.0	135.5	135.2	133.8	133.2
네덜란드	95.7	96.9	101.2	111.7	113.3	113.6	113.4
영국	80.7	83.0	85.7	96.5	103.2	103.5	108.2
미국	75.6	79.6	85.7	92.7	99.7	104.4	107.4
계	4,204.5	4,489.1	4,845.9	5,342.5	5,882.3	6,495.8	6,878.1
EU	1,240.4	1,275.9	1,325.4	1,439.0	1,487.3	1,503.7	1,535.6

EC국가들 중  
해외로부터의  
이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이며  
프랑스와 영국 등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주 : 1) 1987년~1989년까지의 데이터는 1987년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고려하여 조정되었음. 독일의 경우 인구가 1990년까지는 서독에 국한되었으나 1991년부터는 독일 전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4.

들 중에서 영국은 해외로부터의 이주자가 약 200만명으로 그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들의 구성요소를 보면, 1993년의 경우, 아일랜드인이 46만명, 인도인이 15만명, 미국인 11만명, 카리비안과 파키스탄인들이 약 10만명 정도이다. 이러한 이주자들의 대부분은 소위 '전통적 이주자' 들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본은 해외로부터의 이주자가 130만명을 넘고 있는데, 이들의 50%인 60만명은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표 5〉에는 OECD국가들의 총인구수 및 증가요소가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있어서 유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로 보면 서독이 중유럽 및 동부유럽으로부터의 이주민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으며, 그 뒤를 프랑스와 스위스가 따르고 있다. 남유럽의 경우, 그리

OECD국가들 중에서 영국은 이주자의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대부분이 소위 '전통적 이주자' 들이라 볼 수 있다.

〈표 4〉 OECD국가의 해외로부터의 이주인구

(단위 : 천명, %)

	해외로부터의 이주자 <sup>1)</sup>			
	1983		1993 <sup>2)</sup>	
오스트리아	297	3.9	690	8.6
벨기에	891	9.0	921	9.1
덴마크	104	2.0	189	3.6
핀란드	16	0.3	56	1.1
프랑스	3,714	6.8	3,597	6.3
독일 <sup>3)</sup>	4,535	7.4	6,878	8.5
아일랜드	83	2.4	94	2.7
이탈리아	381	0.7	987	1.7
일본	817	0.7	1,321	1.06
룩셈부르크	96	26.3	125	31.1
네덜란드	552	3.8	780	5.1
노르웨이	95	2.3	162	3.8
스페인	210	0.5	430	1.1
스웨덴	397	4.8	508	5.8
스위스	926	14.4	1,260	18.1
영국	1,601	2.8	2,001	3.5

주 : 1) 해외로부터의 이주인구 데이터는 각국의 인구등록부(population registers) 참조. 단, 프랑스는 인구조사(census), 영국은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 일본과 스위스는 외국인 등록부(register of foreigners)를 참조.  
 2) 1993년 데이터 중 프랑스는 1990년, 아일랜드는 1992년 참조.  
 3) 독일의 1983년 데이터는 통일전 서독에 대한 것이며, 1993년은 독일 전체에 대한 데이터임.  
 자료 :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4.

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이 전통적인 인구 유출국이었으나 최근에는 북아프리카(Maghreb: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로부터의 이주민이 늘고 있다.

다. 미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주민에 의해서 탄생되고 개발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규모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 〈표 6〉에는 1970년, 1980년 그리고 1990년에 조사한 이주민 1세대의 구성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국가로 보았을 때에는 멕시코인들이 이주민 1세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5〉 OECD국가의 총인구 및 증가요소(1982~1992)

(단위 : 천명)

	1982~1986 <sup>1)</sup>		1987~1991 <sup>1)</sup>		1992		총인구 (1992. 12. 31 기준)
	NI	NM	NI	NM	NI	NM	
북미	1,855	634	2,055	82	2,112	988	85,813
캐나다	199	3	199	147	205	195	27,623
미국	1,656	631	1,856	673	1,907	793	258,190
일본	732	-8	475	-22	352	48	124,400
서유럽	298	62	499	943	441	1,174	240,562
오스트리아	0	-3	6	32	12	37	7,910
벨기에	4	-2	16	8	20	26	10,068
프랑스	221	48	238	69	223	86	57,527
독일 <sup>2)</sup>	-105	-10	-9	692	-76	788	80,975
아일랜드	32	-18	23	-23	22	1 <sup>3)</sup>	3,547 <sup>4)</sup>
룩셈부르크	0	1	1	3	1	6 <sup>3)</sup>	390
네덜란드	55	13	65	46	67	43	15,239
스위스	15	15	20	44	25	40	6,908
영국	76	18	139	72	147	147 <sup>3)</sup>	57,998 <sup>4)</sup>
남유럽	1,368	157	1,346	94	1,383	387	175,438
그리스	35	8	10	50	8	152 <sup>3)</sup>	10,300 <sup>4)</sup>
이탈리아	53	98	28	35	30	173	56,960
포르투갈	43	-33	19	-29	14	-9	9,860
스페인	171	-4	86	-13	60	2 <sup>3)</sup>	39,085 <sup>4)</sup>
터키	1,066	88	1,202	0	1,271	69	59,233
북유럽 국가	29	21	54	46	70	67	23,487
덴마크	-4	5	1	6	7	12	5,181
핀란드	19	4	14	3	17	24	5,055
아이슬란드	2	0	3	0	3	1 <sup>3)</sup>	260 <sup>4)</sup>
노르웨이	8	6	14	6	15	10	4,299
스웨덴	4	6	22	31	28	20	8,692
오세아니아	153	83	163	113	172	48	21,054
호주	128	83	132	117	140	45	17,569
뉴질랜드	25	0	31	-4	32	3	3,485
OECD 유럽	1,695	241	1,898	1,083	1,894	1,628	439,487
EU	582	125	617	916	523	1,427	347,130
전체 OECD	4,435	950	4,591	1,994	4,530	2,712	870,754

남유럽의 경우,  
그리스·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전통적인  
인구 유출국이었으나  
최근에는  
북아프리카로부터의  
이주민이 늘고 있다.

주 : 1. NI : 자연증가, NM : 순유입

1) 각 기간별 평균

2) 1992년부터 동독이 포함됨.

3) 1991 데이터

4) 중간연도 추정치

자료 :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4.

미국의 이주민 1세대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단일국가로 보았을 경우 멕시코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의 경우, 미국에서의 멕시코인 1세대는 420만명 정도로 아시아인 1세대 490만명과 유럽인 1세대 430만명과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6〉 출생지에 의한 이주민의 구성요소

(단위 : 천명, %)

	1970	1980	1990
멕시코	757.9	2,199.2	4,298.0
캐리비언	523.6	1,258.4	1,938.3
캐나다	812.4	842.9	744.8
중앙아메리카	55.7	353.9	1,134.0
남아메리카	255.3	561.0	1,037.5
아시아	824.9	2,539.8	4,979.0
유럽	5,712.0	5,149.3	4,350.4
기타	675.7	1,175.4	1,285.2
계	9,619.3	14,079.9	19,767.3
총인구수 대비	4.7	6.2	7.0

자료 :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4.

멕시코 1세대 이주민은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에는 1993년까지의 멕시코인의 대미(對美) 이주민 수가 나와 있는데, 1991년, 1992년, 1993년에 각각 95만명, 21만명, 12만명 정도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이 표에서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미국이 1986년에 단행한 이민개혁 및 관리법안(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에 의하여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결과 늘어난 영주권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국가이고 미국에 비하여 그 경제력이 훨씬 낮기 때문에 합법적 이주자 이외에도 불법체류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그 성격상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파악할 수는 없지만, 1990년의 경우 불법입국으로 체포된 멕시코인들의 수가 100만명에 달하였다(〈표 8〉 참고).

〈표 7〉 미국으로의 멕시코 이주자 변화추이(1911~1993)

(단위 : 천명)

	인구
1911 ~ 1920	219.0
1921 ~ 1930	459.3
1931 ~ 1940	22.3
1941 ~ 1950	60.6
1951 ~ 1960	299.8
1961 ~ 1970	453.9
1971 ~ 1980	640.3
1981 ~ 1990	1,655.8
1989	405.7(339.2)
1990	680.2(623.5)
1991	947.9(894.9)
1992	214.1(122.5)
1993	126.6( 17.5)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국가이고 경제력이 훨씬 낮기 때문에 합법적 이주자 이외에도 불법체류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 : 1. 데이터는 미국에서의 영주권을 교부받은 사람의 수를 나타냄. 1989년 데이터부터는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안(IRCA)'에 의해 혜택을 받았던 이민자들에게 발행된 허가증을 소지한 자까지 포함한 수치이며, ( ) 안의 수치는 허가증 소지자임.

자료 : OECD,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4.

〈표 8〉 미국-멕시코의 인구이동

(단위 : 천명)

	1980	1990
미국으로부터의 멕시코 방문객	3,323	6,768
멕시코로부터의 미국 방문객	2,150	4,478
합법적인 멕시코 이민	56	101
불법입국으로 체포된 멕시코인	817	1,092

자료 : OECD, *Migration and Development*, 1994.

## Ⅳ. 인구이동의 경제분석

### 1. 경제분석의 모형

인구이동은 지역경제학에서 가장 큰 주제 중의 하나이다. 지역공공재를 찾

인구이동에 관한 논의는 지역경제학, 노동경제학, 경제성장론 그리고 재정학 등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지역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비왜곡적 조세에 의해 마련된다면, 지역공공재는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는 Tiebout 모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 지역의 인구수가 적정할 때, 그 지역의 지역공공재 공급은 토지세로 모두 충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Henry Georgy 정리도 지역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이동은 노동경제학 및 경제성장론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노동경제학에서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는 대체성(substitutability)과 보완성(complementarity)에 관한 것이다. 유입노동력이 국내의 임금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이 논쟁은 그 영향이 미약하다는 쪽으로 대부분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sup>6)</sup>.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지역간 재원이전(social transfer)에 관한 것이다. 재정학자들은 인구이동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의 재분배 노력이 유효한가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해 왔다<sup>7)</sup>. 최근 이 논의들이 시사하는 바는 지역내 재분배와 지역간 재원이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sup>8)</sup>. 서독의 높은 사회보장제도가 동독으로의 높은 재원이전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구이동에 관한 논의는 이처럼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OECD(1994)에 발표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6) OECD, "The Macroeconomic Impact of Immigration: Review of the Literature Published Since the Mid-1970s."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1993을 참고하기 바람.

7) 많은 논문들이 이를 주제로 하고 있다. D. Epple and T. Romer, "Mobility and Re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 828~858, 1991 및 D. E. Wildasin, "Budgetary Pressures in the EEC: A Fiscal Federalism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80, 69~74, 1990과 동 저자의 "Income Redistribution in a Common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81, 1991 그리고 이 논문들에 실려 있는 참고문헌들을 참고하기 바람.

## 2. OECD에서의 논의<sup>9)</sup>

### 가. 서론

전세계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어서, 재화·용역의 무역 그리고 자본의 이동이 인구이동보다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쉽게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인구이동은 이주자 당사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구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규범적 판단과는 별도로 현재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동유럽 및 남유럽에서의 인구이동이 서유럽국가들의 현안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이동의 근본적 문제는, 지역간 경제의 불균형적 발전으로 인하여 인구유출의 규모가 인구유입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역 및 투

자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원조를 단행하며, 국가간에 협조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면 저개발국의 경제력이 향상되어 인구이동이 줄어들 것이다.

#### 나. 인구이동과 유럽경제통합

유럽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우리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유럽의 EC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는데, 요소가격균등화 원칙이 유럽의 통합시장에 어느 정도 적용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EC의 비회원국에 대한 높은 관세장벽이 어느 정도 EC 회원국에 대한 인구이동의 압력으로 작용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① 무역개방의 정도((수출+수입/GDP)) ② 회원국간의 소득격차 ③ 인구패턴에 관한 시계열자료가 검토되었는데, 이 데이터들에서 관측된 바에 의하면 이탈리아로부터 다른 회원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EC 회원국간 인구이동은 그 동안 줄어들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 비회원국으로부터 회원국으로의 인구이동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인구이동의 동학(動學)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시장의 힘이 제도의 힘보다 크다는 것이다. EC가 회원국간 인구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제도를 택하였지만, 그러한 인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의 패턴은 사실상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따라서 인구이동의 자유는 대규모의 인구이동을 야기시키는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역장벽을 쌓을 경우 무역을 대체하고자 하는 인구이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현재 남유럽 및 동유럽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시장개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멕시코간에 체결된 NAFTA는 매우 흥미롭다.

#### 다. NAFTA의 효과에 대한 예상

NAFTA가 미국 및 멕시코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경제규모를 보았을 때,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NAFTA가 미국·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이동의 근본적 문제는, 지역간 경제의 불균형적 발전으로 인구유출의 규모가 인구유입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는 점이다.

8) A. Mansoorian and G. M. Myers, "Attachment to Home and Efficient Purchases of Population in a Fiscal Externality Econom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2, 1993, pp. 117~132 참고.

9) G. Tapono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its Effects on Employment and Migration," *Mig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94를 요약한 것임.

무역장벽을 쌓을 경우 무역을 대체하고자 하는 인구가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대규모 인구가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을 통하여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저기술(low-skilled)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간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멕시코는 노동집약적 상품을 미국시장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저기술-노동자의 임금은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관세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미국의 저기술-노동자들은 노동력의 재배치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 전반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변화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멕시코는 NAFTA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지만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단기적으로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구가동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멕시코간 경제력 격차를 줄여서 양국간의 인구가동을 완화시키는 것은 어차피 장기정책일 수밖에 없다. 1970년대 EC가 대외무역장벽을 쌓음으로써 범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구가동 및 개발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원칙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라. 경제통합의 초기조건

원론적으로 말하면, 지역간 경제력이 수렴하면서 인구가동의 압력은 사라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질문은 수렴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와 장기적 균형은 어떠한 모습을 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①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 ② 제도적 틀 ③ 통합을 위한 보완조치 등이다. 특히 초기조건(경제력의 상대적 크기, 임금격차, 생산성 격차, 이질성의 정도)은 수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초기조건은 수렴의 속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균형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초기조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경제통합후 지역간의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요소가격균등화 정리에서도 초기조건에 대한 가정이 달라질 경우 무역이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초기조건의 성격에 따라 경제통합이 통합국가들의 경제상황을 오히려 악화

시킬 수 있다면, 적절한 초기조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경제통합의 시기에 관한 협상을 할 때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앞설 경우 경제통합이 노동시장이나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부정적일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과 멕시코의 매우 큰 경제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NAFTA가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통합의 전단계로서 양국이 무역 및 자본투자의 규모를 상당한 수준까지 확대하였고, 그 결과 통합경제의 성공에 필요한 초기조건이 어느 정도 만족되었기 때문이다.

적절한 초기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V.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통합 과정을 살펴보면 개방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가 미묘하게 얽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이러한 양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개방주의와 지역주의를 정치적 구호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합리주의가 짙게 깔려 있다.

경제학자의 시각을 통하여 표현하면, '개방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지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지역주의는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고,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변화가 일어났다면, 개방 또는 국경의 열림이 많은 국가들에게 '운명' 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간의 경제적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최대화할 때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한다. 이 외부효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본의 지역간 이동이 자유로울 때 생기는 외부효과는 조세수출 또는 조세경쟁의 제목하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고, 조세화합(tax harmonization)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이 인식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자본의 흐름보다 더 큰 규모의 외부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구의 흐름에 관하여 그 현황 및 관련이론을 살펴보았다. 경

경제통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본과 인구의 이동이 유발시키는 외부효과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통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본과 인구의 이동이 유발시키는 외부효과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R. Coase<sup>10)</sup>는 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제주체들간의 재원이 전(transfer)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고, 이러한 이전 또는 재원의 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이해 당사자간의 대칭적 정보공유(대화)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만 국한하여 인구문제와 지역간 재분배 문제를 논하자면, 현재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경기지역으로부터 비도시 지역으로 많은 재원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매우 큰 규모의 재원이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이러한 재원이전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형태의 재원이전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관해서는 향후많은 연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재원이전이 현재처럼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기보다는 남한지역의 이익,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때, 남북간의 재원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훨씬 더 쉽게 형성될 것이다. 또한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지금 당장 허용하는 것이 성공적 통합경제의 형성에 필요한 초기조건을 만족하는가는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만약 인구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급속한 통합을 단행할 때,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더욱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과 그 밖의 관련법률에 임시조항을 넣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제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한 북으로부터의 '보트피플'을 무작정 환영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과연 남북간 통합경제의 초기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통합에 있어서 초기조건은 통합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초기조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후적으로(ex post), 모든 것은 운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통일을 향한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KDI

10) R. H. Coase, "On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960, pp. 1~44.

# 주요국의 민간연금에 대한 조세제도

전 영 준/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I. 서론

인구의 노령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1950, 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또한 의학의 발달 및 보건환경의 개선으로 개인들의 기대수명이 상승한 데 기인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년층의 생계보장은 각국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이는 각종 공적연금제도와 개인들의 저축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각국의 노후생계보장 수단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연금제도(social security system)와 민간연금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노후생계보장을 위해 스스로 적립하는 가계저축(household provided savings)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민간연금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 관련 지출이 증대되어 정부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부양비의 상승과 공적연금 지출의 증가는, 현재 및 미래의 노령인구의 공적연금급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높은 사회보장세를 청년층에 부과해야 하므로, 정부재정에 큰 압박을 가져올 것

증가하는 노년층의 생계보장은 각국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이는 각종 공적연금제도와 개인들의 저축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부양비의 상승과 공적연금 지출의 증가는 정부재정에 큰 압박을 가져올 것이다.

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자유로운 시장기구를 통해 경제를 운용하자는 풍조가 만연하여 노후생활 보장 수단도 정부보다는 기업주와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에 맡기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민간연금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로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부유럽, 구공산권인 동부유럽 그리고 일본과 칠레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를 들 수 있다. 특히 칠레의 경우 1981년 공적연금제도를 민간연금 제도로 대체하여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였으며, 민간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융자산 운용 인력의 양성과 금융시장 환경의 개선 등의 부차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칠레의 공적연금의

〈표 1〉 주요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단위 : %)

	1960	1975	1980	1985
미 국	4.1	6.7	6.9	7.2
캐 나 다	2.8	3.7	4.4	5.4
프 랑 스	6.0	10.1	11.5	12.7
독 일	9.7	12.6	12.1	11.8
이탈리아	5.5	10.4	12.0	15.6
일 본	1.3	2.6	4.4	5.3
영 국	4.0	6.0	6.3	6.7

〈표 2〉 각국의 노인 부양비

(단위 : %)

	1990	2010	2025
미 국	21	22	34
캐 나 다	19	24	38
프 랑 스	24	27	38
독 일	24	34	42
이탈리아	24	34	44
일 본	19	37	49
영 국	27	29	39

주: 노인부양비는 65세 인구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미국 상무성.

민영화를 모델로 인근 국가인 페루와 아르헨티나도 민간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연금이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위기와 퇴직금의 기업연금화와 관련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기업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연금이 도입될 전망이다.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민간연금제도에는 크게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업연금(employer-provided pension)과 피고용자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자산운용가(fund manager)에게 자금운용을 위탁하는 형식의 연금제도(employee-provided pension)가 있다. 또한 기업연금의 경우에도 국가에 따라 국가가 근로자에 대해 기업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강제가입방식이 있는가 하면, 가입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민간연금에 대한 조세제도도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민간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들을 살펴보고 민간연금제도의 도입과 구체적인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국 조세제도의 대체적인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기업연금의 도입에 따른 조세제도의 정비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민간연금제도에는 크게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업연금과 피고용자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자산운용가에게 자금운용을 위탁하는 형식의 연금제도가 있다.

## II. 민간연금 도입의 효과

민간연금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OECD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민간연금과 공적연금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각국의 공적 연금은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자로 포괄하고 있지만, 민간연금의 경우 민간부문의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둘째, 공적 연금은 많은 나라에서 부과방식(pay-as-you-go)을 근간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연금기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드문 반면, 민간연금의 경우는 대부분 적립방식으로 재정이 운용되므로 상당량의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적 연금은 대체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연금의 지수화가 되어 있는 반면, 민간연금의 경우는 이러한 지수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이직이 있을 경우에도 이전의 가입연수가 그대로 보전되는 반면, 민간연금은 특히 확정급부형(defined

공적연금은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자로 포괄하고 있지만, 민간연금의 경우 민간부문의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benefit plan)의 경우에는 이직이 발생하면 가입자들의 가입연수가 보전되지 못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민간연금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공적연금의 민영화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 근로자이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대체로 민간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노후생계보장 수단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민영화는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민간연금 기금의 적립은 저축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는 공적연금이 OECD 각국에서 부과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 민간연금 기금 적립은 민간저축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축률의 증가규모는 민간연금의 공적연금 대체에 따른 민간의 저축행태 변화에 의존하므로 민간연금의 도입에 따른 저축률 추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엄밀한 실증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그 운용방식이 기본적으로 적립방식으로서 OECD국가의 경우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저축률 변동에 대한 평가가 보다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연금의 성격과 재정운용 방식에 따라 근로자들의 시장위험의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민간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징수하여 공적연금 기금을 관리하고 연금급여 산식에 따라 정해진 연금급여를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기금 운용에 따른 모든 시장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연금의 경우는 연금운영에 따른 시장위험의 귀착의 양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확정각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 기업연금하에서의 피고용자들은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제도하에서는 징수한 보험료를 금융시장에서 운용하여 얻어진 원리금으로 퇴직후 피고용자들의 연금급여에 충당하므로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시장위험을 피고용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확정급부형 기업연금하에서는 고용주들이 시장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동 제도하에서 피고용자들은 은퇴 후 연금급여 산식에 의해 정해진 연금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연금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에 관계없이 확정된 연금급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확정급부형하에서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시장위험과 별도로 피고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직

할 경우 그 당시까지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위험이 그것이다. 또한 기업연금의 운용형태와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연금급여의 지수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연금수익률의 감소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민간연금은 공적연금과 비교하여 연금과 관련된 시장 위험이 민간에 보다 많이 귀착되는 경향이 있다.

공적연금의 민영화는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으며 민간연금 기금의 적립은 저축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표3〉 각국의 공적연금과 민간연금 개관

	공적연금			민간연금			조세제도
	적용대상	연금급여형태 평균임금대체율	재정운용방식 사회보장세 (고용자, 피고 용자)	제도형태 경제활동인구 중 참가비율 연금급여	연금급여형태 공적연금을 포함한 평균 임금대체율	재정운용방식 연금보험가입 여부	
미국	모든 근로자	소득비례형 41%	혼합적립방식 12%	자발적 가입 50% 확정급부형 혹은 확정각 출형	일시금 혹은 연금 68%	적립방식 Yes 대부분의 확 정급부형 민 간연금인 경 우	고용자기여 분 소득공제, 「피고용자 기 여분과세」, 「연금급여 과 세」
캐나다	「모든 국민에게 균 등분 연금 제도」, 「모 든 노동자 들에게 소 득비례형 연금제도」	균등분+ 소득비례분 35%	부과방식 「5.2% 사회 보장제(소득 비례분)」, 「균 등분은 일반 회계에서 부 담」	자발적 가입 29% 확정각출형 (대부분)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 70%	적립방식 Yes 온타리오주에 만 허용	「고용자 및 피고용자의 기여분 소득 공제(상한전 존제)」, 「연금 급여 과세」
프랑스	모든 근로자	소득비례형 50%	부과방식 16.45% 「(장 해연금제외, 6.65% 피고 용자, 9.8% 고용자)」	강제가입 100% 확정급부형	연금형태 67%	적립방식 No	고용자 및 피 고용자의 기 여분 소득세 공제 연금급여 과 세

민간연금은 공적연금과 비교하여 연금과 관련된 시장위험이 민간에 보다 많이 귀착되는 경향이 있다.

<표3>의 계속

	적용대상	공적연금		민간연금			
		연금급여형태 평균임금대체율	재정운용방식 사회보장세 (고용자, 피고 용자)	제도형태 경제활동인구 중 참가비율 연금급여	연금급여형태 공적연금을 포 함한 평균 임 금대체율	재정운용방식 연금보험가입 여부	조세제도
독 일	모든 근로자	소득비례형 50%	부과방식 17.5%	자발적 가입 42% (서독) 확정금부형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 60%	Book Reserve Yes	「고용자 기여분 소득공제」 「연 금 급여 부분적 과세(재정운용 방식에 따라)」
이 탈 리 아	근로자, 자영업자, 일정 전문직 종사자	소득비례형 80%	부과방식 27.07% (7.54% 피고 용자, 19.53% 고용 자)	자발적 가입 5% 주로 기업 간 부들 확정금부형	연금형태 60%	단체협상, 혹은 보험 가입, 또는 Book Reserve No	연금급여과세
일 본	모든 국민 (균등분) 노동소득자(소득비례형) 「민간보험대체가능 (contracting out)」	균등분 소득 비례분 47%	부분적립방식 14.5% 균등분은 일 반회계에서 충당	자발적 가입 39% (적립방식) 그 외(비적립 방식) 확정금부형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 60%	적립, 혹은 비적립 또는 Book Re- serve Yes 전기이월금 의 50% 정 도	「기여분 소득 공제」, 「연금 급여 과세」
영 국	모든 근로자 민간보험 대체가능	균등분(기혼 가입자들에게 더 높은 급 여)+소득비 례형 40%	부과방식 19.4% ( 피고 용 자 9%, 고용자 : 10.4% 저소득층에는 달의 세원적 용, 면제되는 계층은 증대	자발적 가입 29% 대부분 확정 금부형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 68%	적립방식 No	「피고용자, 고용자 기여 분 소득공제」 「연금급여 과 세(일정수준 의 일시금은 비과세)」

### Ⅲ. 각국의 민간연금에 대한 조세정책

#### 1. 개관

민간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각출료에 대한 소득공제, 기금운용 수입에 대한 조세혜택 그리고 연금급여 단계의 과세제도로 대별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연금보험각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고, 연금기금수입에 대해 비과세하며, 연금급부에 대해 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연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는 첫째, 세제혜택이 노후생활저축을 촉진시킨다는 것으로, 만일 이러한 세제혜택이 없을 경우 각 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노후생활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공적연금을 민간연금으로 대체했을 때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공적연금에 비하여 민간연금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을 정부 대신 민간이 떠맡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종의 보상 측면에서 민간연금에 대한 조세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를 이유로 세제혜택을 줄여 나가는 경향이 있다.

연금에 대한 조세정책은 경우에 따라 민간연금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민간연금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요건, 권리의 귀속(vesting),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적정수준 이상의 기금을 적립할 경우에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 2.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용자의 기여분은 고용자의 소득에서 손금산입되며 피고용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 미국, 영국에서는 100% 모두 손금산입되고 있다. 고용주의 기여금에 대해서 100% 손금산입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연금보험각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고, 연금기금수입에 대해 비과세하며, 연금급부에 대해 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소득공제 상한을 두는 것은 정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줄이고 고소득층에게 지나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용자의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평균적인 근로자의 한계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에서는 이 세율로 피고용자의 소득에서 과세되나 15%의 세율은 평균적인 근로자의 한계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피고용자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영국, 캐나다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100% 소득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 벨기에와 뉴질랜드가 있는데 벨기에에서는 피고용자의 기여분에 대해서 30% 내지 40%만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소득공제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미국에서는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에 가입해 있는 피고용자의 기여분에 대해 연방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도 과세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고용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기업연금은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기업주가 피고용자에게 제공하는 부가급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연금의 기여금의 대부분을 고용주가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용자의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하겠다.

고용자의 기여분에 대한 손금산입과 피고용자 기여분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미사용 소득공제의 이월 문제'를 들 수 있다. 만일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을 경우, 각자의 기여금에 대해 모두 손금산입받지 못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각국에서는 미사용 소득공제의 이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확정각출형 연금제도하에서 당기에 사용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음기로 이월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확정각출형 연금제도하에서 당기에 사용하지 않은 기여금은 무한정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공제의 이월에 대한 규정은 확정급부형 연금제도하에서 고용자의 기여분을 무한정 이월할 수 있는 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기업연금에서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규정은 소득공제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다. 소득공제 상한을 두는 것은 정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줄이고 고소득층에게 지나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경우 피고용자가 둘 이상의 민간연금제도에 가입했거나, 고소

득 피고용자에게 연금급여가 이루어질 때 소득공제의 상한선이 낮아진다. 또한 소득공제의 상한선은 확정각출형과 확정급부형 연금제도하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다. 확정각출형 연금제도하에서는 소득공제의 상한은 총급여의 25%와 3만달러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확정급부형 연금제도하에서는 소득공제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연금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상한선이 12만달러(3만달러×4)로 정해져 있다. 캐나다에서는 기업연금과 피용자 자신이 가입한 민간연금(individual plan) 전체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상한이 총급여의 18%로 정해져 있다. 이렇듯 기업연금과 민간연금이 통합되어 있는 것은 모든 연금 가입자들에게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영국에서는 소득공제의 상한이 연령이 상승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퇴직이후의 수입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행의 각국 조세제도하에서는 Book Reserve Plan을 시행할 경우 세제혜택이 줄어들지만, 연금기금을 기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표 4〉 소득공제 상한(영국, 1994)

(단위 : %)

	소득공제 상한(총급여 대비)
35세까지	17.5
36 ~ 45세	20.0
46 ~ 50세	25.0
51 ~ 55세	30.0
56 ~ 60세	35.0
61 ~ 73세	40.0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Book Reserve Plan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연금급여에 대비하여 연금기금을 조성하지 않고도 마치 연금급여만큼 기금을 조성한 것같이 취급받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Book Reserve Plan 하에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의 대상과 규모는 연금기금을 적립하는 경우보다 축소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독일에서는 30세 이하의 가입자들에게는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기여금의 40%만 소득공제하고 있다.

현행의 각국 조세제도하에서는 Book Reserve Plan을 시행할 경우 세제혜

현행 주요국의 조세제도하에서 연금기금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고용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연금기금 적립을 하도록 할 유인이 있다.

택이 줄어들지만, 연금기금을 기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업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 3. 기금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현재 캐나다,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연금기금 투자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나라들의 예에는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이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연금은 비과세 혜택을 보는 투자이므로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주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법인세 환급액을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에서도 연금기금 운용수익 중 배당금 수입의 경우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기납부한 법인세는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

현행 주요국의 조세제도하에서 연금기금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고용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연금기금 적립을 하도록 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예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일단 연금기금에 적립되면 연금급여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규정하는 방법과 캐나다와 영국에서와 같이 연금기금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 4. 재산세에 대한 규정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연금기금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벨기에(0.17%), 일본(1.17%)에서는 연금기금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Book Reserve Plan하에서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신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 5.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 규정은 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형태(annuity)로 받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대체로 연금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경제적 이유는 불분명하며 다만 연금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급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삶으로써 예기치 않게 노후생계비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의 기능을 하는 반면, 일시금은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타당성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공적연금이 이미 상당부분 보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일시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공제 수준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퇴직 당시 소득의 1.5%까지의 일시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으며, 아일랜드, 호주에서도 연금형태의 급여에 비하여 일시금형태의 급여에 대해 더 큰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일시금을 연금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시금에 대해서는 특별연분연승법(special income averaging provisions)이 적용되는 것 이외의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미국에서는 일정 수준 연령(49.5세) 이전에 일시금을 수령하여 다른 연금저축에 일시금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 일정수준의 벌과금(10%)을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일시금 수령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퇴직자의 일시금 운용의 미숙과 관련된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해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금형태의 급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과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연금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하거나, 각종 소득공제를 인정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Book Reserve Plan하에서는 연금급여의 40%를 제외하고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연금기금을 보험회사를 통해 적립·운용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되고 연금형태의 급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만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또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급여의 비율은 퇴직당시의 연령이 상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연금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하거나 각종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민간연금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조세체계 확립이라는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하겠다.

승할수록 감소하므로 퇴직연령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연금과 공적연금 급여는 소득세 과세체계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일정액(연령과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다름)의 연금급여는 비과세되며, 각종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소득공제는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동일한 균등부분과 연금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소득세와 주개인소득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사회보장세는 과세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피고용자의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용자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으나 연금수급 단계에서 이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IV. 결론

위에서 살펴본 각국의 연금과세의 형태는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기금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및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과세로 요약된다. 따라서 저축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연금의 일시금 형태의 수급시 연금형태의 수급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연금과세의 부담은 고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도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연금에 대한 과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띠고 있어 비교적 효율적인 조세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민간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조세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연금에 대한 과세는 단순히 조세수입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향후 도입될 민간연금(특히 기업연금)의 구조를 결정하고 기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로서 큰 영향을 미칠 요소이므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조세체계 확립이라는 입장에서 평가돼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퇴직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과세체계가 상이하다. 퇴직금의 경우 각출단계에서는 고용주의 기여금의 일부(40%)가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 손금산입도 각년도의 퇴직금 급여 수준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급

부단계에서 많은 양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율체계도 연분연승법으로 조정되어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각출단계에서 근로자의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고용자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있으며 급부단계에서 비과세되고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는 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급부시 비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불공평한 과세체계의 정비 차원에서 연금 과세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연금 과세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모든 종류의 노후보장 체계에 대해 고용자 및 피고용자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 고소득층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으로의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당기에 사용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일정기간의 장래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연령이 상승할수록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공제의 상한을 연령이 상승할수록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연금 기금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Book Reserve Plan하에서의 소득공제의 수준을 하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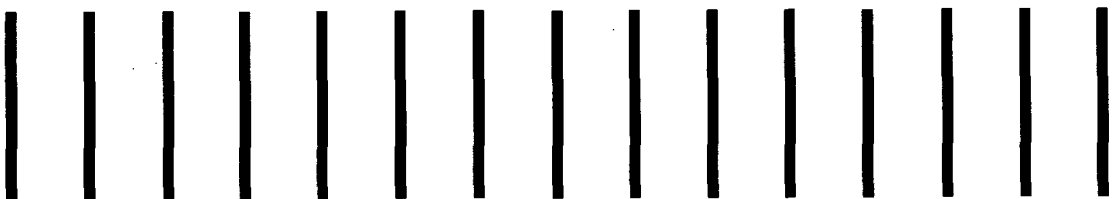
민간연금기금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단, Book Reserve Plan하에서의 연금기금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법인세가 과세되게 하여 연금기금 적립을 유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금과 연금형태의 급여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규정을 상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행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한편 연금급여에 대한 일정수준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연금형태로 연금급여를 받는 것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누리도록 하여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비과세되고 있는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다른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돼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퇴직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과세체계가 상이하다.



# 정책흐름

1.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 개최
2. 1996 회계연도 정부결산
3. 재정자금 배정제도 개선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5. 1997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영(안)
6. 1998년 예산요구 현황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 개최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산업경제과에서 5월 20일에 발표한 「대통령 주재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 개최」의 내용입니다.

### I. 지방중심 경제활성화의 중요성

- 이제까지의 경제발전과정에서는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
  -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에서 개발전략과 정책을 수립·결정하고 주요 대형투자사업 등을 집행
  - 지방은 참여가 제약되어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국가전략을 집행하는 하부적 역할을 담당
- 그 결과 수도권 일극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비효율성의 누적에 따른 지속적 발전의 한계 노정
  - 수도권 밀집과 수도권-지방간, 또는 지역간 발전 격차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문제 심화
  - 각 부문에 스며든 중앙집권적 의식과 행태로 경제·사회의 능률이 전반적으로 저하

(단위 : %)

	인구(1995)	GRP(1994)	금융대출(1996)	사업체수(1995)
수도권	45.1	46.2	64.2	55.1

- 앞으로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방화·분권화로 성장 잠재력을 지방에서 일궈내는 것이 관건
  -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는 시대의 조류이며 세계적으로 경쟁의 단위는 이미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 지방에서의 활발한 투자·생산활동과 역동적인 고용기회 창출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수적
  - 선진국에서도 기업유치 등 경제발전의 주역은 지방자치단체

### II.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전략

#### 1. 지방경제발전의 제약요인

- 기업의 입장에서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불리한 여건
  - 토지가격면에서 경쟁국보다 결정적으로 불리
- \* 토지가격 비교(달러/평방미터)
  - 한국 부산, 녹산: 226달러

- 말레이시아 폰티앙: 48달러
- 일본 센다이: 126달러
- 중국 청도: 9.2~25.3달러

- 지방에 입지할수록 과다한 준조세 부담에 노출

\* 평균 기부금부담(연간)

• 수도권 중소기업: 67만 6천원, 지방중소기업: 149만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재정적 유인·자율결정권한 미약

- 전체 가용재원 중 지방재원이 54%에 달하나 자치단체간의 격차가 심해 일선자치단체의 재정력은 매우 취약

(단위 : %)

	시·도	시	군
재정자립도 평균	67	53	23
최고 및 최저	서울 98 전남 18	과천 95 상주 13	용인 74 봉화 8

- 교부세·양여금·보조금 등 현행 재정지원 방식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적 유인으로 미흡

- 토지관련 각종 규제권한이 대부분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등 자치단체의 자발적 투자여건 개선이 매우 어려운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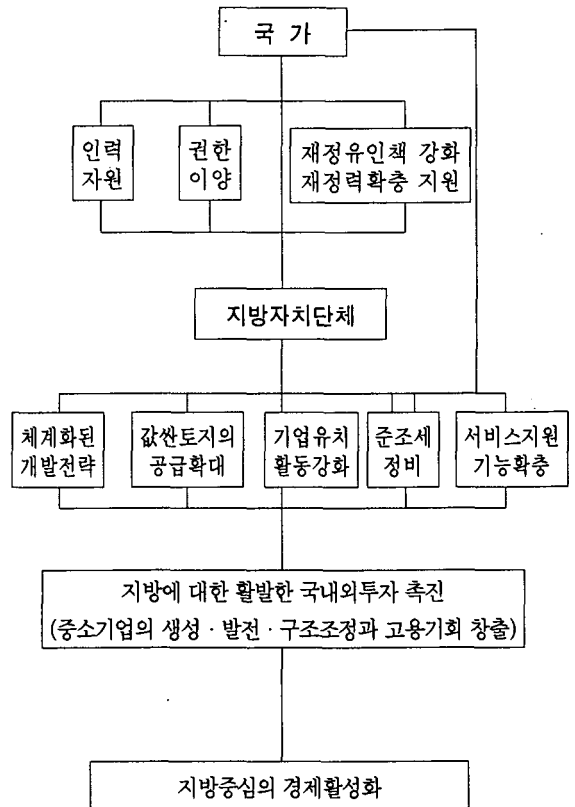
○ 지방자치 실시 경험이 일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국가도 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한 신뢰에 주저

- 지방단위에서 자치단체와 협조하며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민간주체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 추진 전략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적극적인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노력 전개



### Ⅲ. 주요 시책

####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역량 보강

- 지방자치단체에 경제부처의 전문인력 「팀」 파견 지원
  - 1개 시·도당 3~5명(재정경제원 팀장 3급 포함)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감안하여 결정
  -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할 경우에만 파견(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
  - 추가증원 없이 기존의 별도정원을 활용하고 인건비·주거비용은 국가에서 부담
- 임무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작성 지원
  - 합작투자·대형 SOC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
  - 차관도입·지방채인수·민자유치·공단조성 등 주요 국가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지원
- 지방의 규제개혁을 위한 국가와의 조정업무
- 산업은행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기능 강화
  - 중앙부처 파견팀의 검토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조사분석, 재원조달방안 등 실무자문기능 담당
  -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의 선정, 타당성 검토 등 실무지원

#### 2. 지가안정을 위한 용지공급 확대

#####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용지 및 택지공급 촉진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승인 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범위를 '30만평 미만'에서 '100만평 미만'으로 확대
  - 향후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중단
  -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 등 지원(종래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수준)
  -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압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농지전용권의 시·도지사에게 대한 위임 범위를 확대
  - 996년말 이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체납된 대체 농지 조성비, 농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의 징수유예
  - 투기와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 조성완료 후 일정 기간(1년) 이상 미분양상태인 산업단지의 경우 공매제도 도입
  - 조성원가 이하라도 경매를 실시하여 공장용지공급 확대

####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장부지 임대사업의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용 공장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액만큼을 국고에서 보조
-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일부 용자지원, 지방채 발행 등도 검토

#### 다. 산업촉진지구제도 도입

- 준농림지역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공장 및 물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시장·군수가 사전에 지정
-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토지를 한정적으로 열거(negative list 방식)
- 동 지구 지정시 농지전용협의권한의 시·도지사 위임범위를 확대

#### 라. 산업단지 및 공장설립 관련 규제 및 부담의 완화

- 산업단지 지정·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투명한 '협의 기준'을 제정·고시(구비서류 정비·협의기간 명시)
- 기타 관련제도의 개선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통합운영방안을 포함한 관련제도의 합리적 보완방안 검토
  - 시장·군수가 중소기업자의 개별공장용지로 특별매각할 수 있는 폐도, 폐하천 등 국·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

-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 밖의 종업원용 사택부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 3.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세제유인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 인센티브 도입
  - 해당지역에서 징수되는 신규 창업법인의 법인세 중 50%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10년간 지원
  - 기존법인의 신설사업장은 신설후 5년간 본사 납부 법인세액 중 해당사업장 부분의 50%를 지원
  - 지원단체: 수도권 이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
- 확실한 사업성과가 예상되는 주요 지방사업에 대하여 국고분담(matching fund) 방식을 적극 활용
- 국고보조금 지원방법을 사업의 성격과 지원비율 등에 따라 차별화하고 지원시기도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정
- 기업유치실적 등 경제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뚜렷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재원 배분상 우대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기업유치 등에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 세율제도의 적용세목을 확대
- 현재는 주민세·자동차세·지역개발세 등에 국한된 것을 기업활동에 밀접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으로 확대

-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발행확대를 통한 지방 자치단체 지원 강화
- 정부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를 인수 해 주고 동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용 자사업을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특예탁금을 제외한 국공채인수자금(1조 9천억원)을 활용
  - 공공자금관리기금 조달금리(10.37%)보다 2% 내외 저리로 지원하되 국고에서 이차보전(利差補塲)
- 지원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산업은행이 타당성 평가후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차입 확대
- 내년도 외화차입 한도를 확대 (1996년중 8억 5천만 달러)
- 현재 산업단지 및 도로건설용에 국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차입 용도를 환경·물류시설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확대
  
-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의 운용에 지방의 참여 폭을 확대
- 지방에서 집행되는 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 등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집행과정에 지방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에 지역실정에 맞는 제조업 이외의 사업도 포함

#### 4. 기업에 대한 준조세 정비

- 기부금 부담의 대폭적인 감축
- 문화재 개·보수, 마약퇴치 등 국가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으로 흡수
- 행사경비 보조, 시설물 설치 요구 등 법적 근거 없는 협조 요구는 금지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엄정한 준수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에 의존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를 시정
- 조례 제·개정시 성금·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 금지
- 불법적인 기부금품모집행위의 집중단속 강화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집된 기부금은 모두 세법상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비인정 한도 축소도 검토
  
- 법정부담금의 전면 재검토
- 기업 입장에서 납부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부담금의 폐지 또는 요율재책정 검토
- 부담금의 사용용도 및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담금 관련 기준 및 절차의 투명화 검토

#### 5. 지방에 대한 서비스지원체제 강화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주체 형성 지원
- 시·도별 지역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중소기업 관련기관간의 연계체제 구축
- 지방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당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의·

조정·자문기능 강화

- 신기술보육사업, 기술혁신센터, 기술연구집단지(technopark)등을 통한 연구·기술인력 및 자원의 연계활용 유도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체제의 효율화

- 국가의 기업지원 네트워크(Inno-NET)를 지방자치단체에 연결

○ 지방중소기업에 기술·판로·정보 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판로·경영지도 등 각종 서비스를 한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확대

○ 1997년에 8개 시도에서 추진중 → 15개 시도로 단계적 확대

- 용지현황·유치업종·기반시설 등 산업입지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력 등 지원 강화

- 공공직업 훈련기관이 지역별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공급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훈련과정을 도입
-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평가 결과를 받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우대보증을 적용하여 신용보증한도를 확대(매출액의 4분의 1 → 3분의 1)

#### IV.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제도를 탈피하고 지방화·분권화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켜야 할 단계

○ 이를 위하여 국가가 권한·책임·재원의 상당부분을 새로운 발전전략의 추진주체가 될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여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는 최적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이 설정된 국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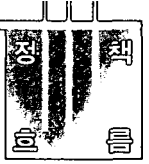
- 지역주민과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 선진국 자치단체에 필적하는 투자·생활환경을 조성하여

- 지방을 국민경제발전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함.

○ 이상의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지방중심의 경제발전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3년)으로 '지방발전지원위원회'를 운영

- 구성 : 경제부총리, 내무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 등 경제장관
- 기능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보완
  - 해외투자유치·공단계획수립 등에 대한 자문
  - 경제부처·KOTRA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원
- 위원회의 실무기능은 현행 시·도경제협의회(위원장 : 재정경제원 차관)가 담당



## 1996 회계연도 정부결산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국고국 회계총괄과에서 5월 27일에 발표한 「1996 회계연도 정부결산」의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 정부는 1997년 5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원이 작성한 1996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하였음.
- 정부결산은 일반회계 및 2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33개 정부관리 기금의 결산, 국가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이 108조 5,269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2조 398억원으로, 세잉잉여금 6조 4,871억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4조 566억원을 제외하면 2조 4,305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33개 정부기금은 총 2조 7,53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 1996년도말 현재 국가채권액은 74조 3,36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 1,5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또한 1996년도말 현재 국가채무액은 36조 8,277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조 2,017억원이 증가하였음.
- 정부는 위와 같은 정부결산을 8월 20일까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후 9월초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I.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은 108조 5,269억원, 세출결산액은 102조 398억원이며, 6조 4,871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조 566억원을 제외하면 2조 4,305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

\* 기업특별회계결산(기업회계방식)

- 양곡·철도·통신·조달특별회계 등 4개의 기업특별회계는 총 2,46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

- 1996년말 현재 4개 기업특별회계의 총자산규모는 30조 1,152억원 규모임.

(단위 : 억원)

재무상태		손익상황	
자산	301,152	총수익	59,732
부채	99,592	총비용	57,272
자본	201,560	당기순이익	2,460 <sup>1)</sup>

주: 1) 통신 2,260억원, 양곡 517억원, 조달 241억원, 철도 -558억원

## II. 기금결산

○ 33개 정부기금의 당기순이익은 총 2조 7,535억원 규모이며, 국민연금기금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국민주택기금에서 주로 흑자가 발생

○ 1996년말 현재 전체 정부기금의 총자산규모는 83조 364억원임.

(단위 : 억원)

재무상태		손익상황	
자산	830,364	총수익	156,755
부채	535,278	총비용	129,220
자본	295,086	당기순이익	27,535 <sup>1)</sup>

주: 1) 국민연금 19,549억원, 국민주택 4,251억원, 농안 2,153억원, 양곡증권정리 -2,029억원

###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억원)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이월액	순잉여금
일반회계	602,758	584,808	17,950	10,763	7,187 <sup>1)</sup>
특별회계	482,511	435,590	46,921	29,803	17,118 <sup>2)</sup>
기타특별회계	397,761	370,545	27,216	26,598	618
기업특별회계	84,750	65,045	19,705	3,205	16,500
합 계	1,085,269	1,020,398	64,871	40,566	24,305

주: 1) 세입증가 4,116억원, 불용액 3,071억원

2) 세입증가 1,458억원, 불용액 15,660억원(재특 4,477억원, 철도 3,399억원)

### Ⅲ. 국가채권 결산

○ 국가채권액은 74조 3,365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하여 9조 1,599억원이 증가(14.1% 증가)

(단위 : 억원, %)

	1996년도말 (A)	1995년도말 (B)	전년대비증감	
			금액(A-B)	비율(A/B)
일반회계	59,452	53,734	5,718	10.6
특별회계	289,837	240,328	49,509 <sup>1)</sup>	20.6
기 금	394,076	357,704	36,372 <sup>2)</sup>	10.2
합 계	743,365	651,766	91,599	14.1

주: 1) 융자회수금 40,225억원, 예금 및 예탁금 1,550억원  
2) 융자회수금 19,481억원, 예금 및 예탁금 16,658억원

### Ⅴ. 예비비 결산

○ 1996 회계연도 예산액 9,718억원 중 8,331억원이 지출되고 165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1,222억원이 불용

(단위 : 억원)

	예산액(A)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A-B-C)
일반회계	9,487	8,331 <sup>1)</sup>	165	991
특별회계	231	-	-	231
합 계	9,718	8,331	165	1,222

주: 1) 재해대책비 3,488억원, 일반경비 4,382억원, 봉급 및 공공요금 434억원

### Ⅳ. 국가채무 결산

○ 국가채무액은 36조 8,277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2,0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채발행으로 인한 채무증가가 주요 원인임.

(단위 : 억원, %)

	1996년도말 (A)	1995년도말 (B)	전년대비증감	
			금액(A-B)	비율(A/B)
차 입 금	80,295	82,422	-2,127	-2.6
국 채	256,574	232,947	23,627 <sup>1)</sup>	10.1
국고채무부담행위	31,408	40,891	-9,483	-23.2
합 계	368,277	356,260	12,017	3.4

주: 1) 국민주택채권 13,304억원, 국채관리기금채권 19,100억원, 농어촌발전채권 -5,482억원

〈참고〉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

1) 세입결산총괄

(단위: 억원, %)

	1996 예산액(A)	1996 결산액(B)	예산·결산대비	
			차액(B-A)	B/A
조세수입	566,110	570,581	4,471	100.8
내 국 세	463,079	469,104	6,025	101.3
관 세	54,997	53,095	-1,902	96.5
방 위 세	330	143	-187	43.3
교 통 세	47,704	48,239	535	101.1
세외수입	19,053	18,698	-355	98.1
경 상 이 전 수 입	14,718	13,740	-978	93.4
재 화 및 용 역 판 매	2,223	2,471	248	111.2
차 관 수 입	737	887	150	120.4
기 타 세 외 수 입	1,375	1,600	225	116.4
수입대체경비초과	-	180	180	-
전년도 이월금	3,065	13,299	10,234	433.9
합 계	588,228	602,758	14,530	102.5

2) 국세의 예산액 대비 징수실적

(단위: 억원, %)

	1996 예산액(A)	1996 조세수입(B)	비 율	
			B/A	구성
1. 내국세	463,079	469,104	101.3	82.2
직 접 세				
소득세	145,034	147,669	101.8	25.9
법인세	92,541	93,561	101.1	16.4
토지초과이득세	112	68	60.7	0.0
상속세	12,748	9,665	75.8	1.7
자산재평가세	902	2,167	240.2	0.4
간 접 세				
부가가치세	166,064	167,895	101.1	29.4
특별소비세	29,102	31,193	107.2	5.5
주세	4,584	4,168	90.9	0.7
증권거래세	3,621	2,896	80.0	0.5
인지세	3,577	3,560	99.5	0.6
기타내국세	4,794	6,262	130.6	1.1
2. 관세	54,997	53,095	96.5	9.3
3. 방위세	330	143	43.3	0.0
4. 교통세	47,704	48,239	101.1	8.5
합 계	566,110	570,581	100.8	100

나. 세출

1) 기능별

(단위: 억원, %)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B/A	구성비
1. 방 위 비	127,360	134,245	129,450	96.4	22.2
2. 교 육 비	110,740	111,385	110,298	99.0	18.9
3. 사 회 개 발	50,075	51,445	50,211	97.6	8.6
4. 경 제 개 발	130,833	136,085	131,229	96.4	22.4
5. 일 반 행 정	62,559	63,743	62,824	98.6	10.7
6. 지방재정교부금	63,777	63,777	63,777	100.0	10.9
7. 채무상환, 예비비 등	42,884	37,962	37,019	97.5	6.3
합 계	588,228	598,642	584,808	97.7	100.0

2) 성질별

(단위: 억원, %)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B/A	구성비
1. 인 건 비	73,822	74,143	73,746	99.5	12.6
2. 물 건 비	75,263	78,163	76,085	97.3	13.0
3. 경 상 이 전	228,039	228,998	228,728	99.9	39.1
4. 자 본 지 출	72,027	82,528	75,518	91.5	12.9
5. 용자·출자	-	-	-	-	-
6. 보 전 재 원	744	676	676	100.0	0.1
7. 정부내부지출	128,729	129,565	126,429	97.6	21.6
8. 예비비 및 기타	9,604	4,569	3,626	79.4	0.6
합 계	588,228	598,642	584,808	97.7	100.0

###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억원, %)

	예산액 (A)	세입		세출		세계잉여금 (B-C)
		금액(B)	B/A	금액(C)	C/A	
재 정 투 용 자	123,042	118,978	96.7	118,752	96.5	226
국 유 재 산 관 리	15,662	18,644	119.0	14,785	94.4	3,859
농 어 촌 구 조 개 선	54,173	56,580	104.4	54,454	100.5	2,126
농 어 촌 특 별 세	15,900	15,678	98.6	14,864	93.5	814
교 통 시 설	65,310	72,539	111.1	65,114	99.7	7,425
등 기	792	844	106.6	745	94.1	99
지 방 양 여 금 관 리	25,511	26,043	102.1	24,056	94.3	1,987
교 도 작 업	330	327	99.1	230	69.7	97
군 인 연 금	9,208	8,870	96.3	8,857	96.2	13
지 방 교 육 양 여 금	41,136	41,040	99.8	35,228	85.6	5,812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17,587	18,654	106.1	16,816	95.6	1,838
환 경 개 선	6,101	6,281	103.0	5,960	97.7	321
국 립 의 료 원	535	467	87.3	455	85.0	12
토 지 관 리 및 지 역	3,305	5,856	177.2	3,485	105.4	2,371
체 신 보 험	1,415	1,328	93.9	1,314	92.9	14
자 동 차 교 통 관 리	978	934	95.5	917	93.8	17
특 허 관 리	509	698	137.1	513	100.8	185
교 육 환 경 개 선	4,000	4,000	100.0	4,000	100.0	-
소 계	385,494	397,761	103.2	370,545	96.1	27,216
양 곡 관 리	15,927	22,939	144.0	14,734	92.5	8,205
철 도 사 업	31,729	30,972	97.6	27,474	86.6	3,498
통 신 사 업	21,866	29,555	135.2	21,711	99.3	7,844
조 달	1,097	1,284	117.0	1,126	102.6	158
소 계	70,619	84,750	120.0	65,045	92.1	19,705
합 계	456,113	482,511	105.8	435,590	95.5	46,921

### 3. 기금 결산

(단위: 억원)

	재산상태			손익상황		
	자산	부채	자본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
국 민 투 자 기 금	2,701	2,782	-81	321	338	-17
외 국 환 평 형 기 금	40,821	49,030	-8,209	6,042	5,811	231
양 곡 증 권 정 리 기 금	1,565	55,187	-53,622	4,932	6,961	-2,029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18,473	1,767	16,706	5,847	3,694	2,153
종 자 기 금	220	43	177	253	265	-12
농 지 관 리 기 금	35,801	14,785	21,016	800	1,625	-825
국 민 연 금 기 금	228,801	-	228,801	71,078	51,529	19,549
보 훈 기 금	6,471	1,965	4,506	814	562	25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2	-	92	9	10	-1
대 외 경 제 협 력 기 금	10,564	2,638	7,926	766	138	628
청 소 년 육 성 기 금	981	-	981	87	54	33
산 업 개 발 기 금	1,350	-	1,350	272	48	224
군 인 연 금 기 금	3,841	-	3,841	227	719	-492
방 위 산 업 육 성 기 금	888	-	888	19	-	19
장 애 인 고 용 촉 진 기 금	1,858	-	1,858	860	539	321
산 업 기 반 기 금	9,815	8,387	1,428	464	402	62
진 폐 기 금	24	-	24	159	157	2
군 인 복 지 기 금	1,511	-	1,511	1,435	1,048	387
남 북 협 력 기 금	3,428	-	3,428	183	106	77
과 학 기 술 진 흥 기 금	3,872	1,513	2,359	210	99	111
사 회 복 지 사 업 기 금	289	-	289	81	208	-127
직 업 훈 련 촉 진 기 금	2,271	-	2,271	705	1,053	-348
국 민 주 택 기 금	231,676	198,311	33,365	16,516	12,265	4,251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1,989	-	1,989	313	8	305
과 학 교 육 기 금	114	-	114	7	2	5
방 사 성 폐 기 물 관 리 기 금	679	-	679	782	281	501
산 업 재 해 예 방 기 금	857	-	857	1,785	2,119	-334
정 보 화 촉 진 기 금	14,962	1,057	13,905	2,601	1,800	801
해 외 건 설 진 흥 기 금	53,986	53,984	2	4,515	4,516	-1
국 채 관 리 기 금	127,737	127,353	384	9,198	8,899	299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163	144	19	13	12	1
고 용 보 험 기 금	12,219	10,853	1,366	8,957	7,781	1,176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기 금	10,345	5,479	4,866	16,504	16,171	333
합 계	830,364	535,278	295,086	156,755	129,220	27,535

#### 4. 국가채권 결산

##### 가. 회계별

(단위: 억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본년도 발생액	이행기한 도래액	14,998	1,039	2,026	18,063
	이행기한 미도래액	21,347	97,428	195,501	314,276
	소 계	36,345	98,467	197,527	332,339
전년도이전 발생액	이행기한 도래액	13,872	1,204	1,807	16,883
	이행기한 미도래액	9,235	190,166	194,742	394,143
	소 계	23,107	191,370	196,549	411,026
합 계	이행기한 도래액	28,870	2,243	3,833	34,946
	이행기한 미도래액	30,582	287,594	390,243	708,419
	합 계	59,452	289,837	394,076	743,365

##### 나. 종류별

(단위: 억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사 회 보 장 기 여 금	-	-	159	159
재 산 수 입	227	301	36	564
경 상 이 전 수 입	3,167	1,627	3,009	7,803
재 화 및 용 역 판 매 수 입	9	569	5	583
관 유 물 매 각 대	3	5,896	403	6,302
용 자 회 수 금	7,092	245,560	322,593	575,245
예 금 및 예 탁 금	88	2,450	67,896	70,407
기 타 수 입	207	36	2	245
세 입 금 이 외 의 채 권	-	33,398	-	33,398
내 국 세	41,806	-	-	41,806
관 세	3,303	-	-	3,303
방 위 세	677	-	-	677
교 육 세	2,415	-	-	2,415
농 어 촌 특 별 세	438	-	-	438
교 통 세	20	-	-	20
합 계	59,452	289,837	394,076	743,365

## 5. 국가채무결산

(단위: 억원, %)

	1996년말 (A)	1995년말 (B)	증 감	
			차액(A-B)	비율(A/B)
차 입 금	80,295	82,422	-2,127	-2.6
국내 차입금	29,789	30,006	-217	-0.7
해외차입금	50,506	52,416	-1,910	-3.6
국 채	256,574	232,947	23,627	10.1
국고채무부담행위	31,408	40,891	-9,483	-23.2
합 계	368,277	356,260	12,017	3.4
※ 정부보증채무	76,121	150,289	-74,168	-49.4

## 재정자금 배정제도 개선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국고국 국고과에서 5월 30일에 발표한 「재정자금 배정제도 개선」의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 배경

- 지금까지 재정자금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 경비 성질별로 구분하여 배정함에 따라
  - 중앙관서장의 자금집행에 있어 경직성을 유발하고
  - 각 부처는 불요불급한 자금을 요구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등의 문제점 발생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자금을 총액으로 배정함으로써
  - 중앙관서장의 자금집행에 있어서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고
  - 재정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자 함.

○ 개선내용

	현 행	개선안
배정방식 개선	부처별 성질별 구분배정 기본경비의 자동 배정	부처별 총액 배정 정기배정시 함께 배정
자금배정 시기의 정기화	월 3~4회 배정	배정시기의 정기화 (3. 13, 22일)
자금배정 관련 문서의 정비	재배정 통지 및 자금 요구서를 별도 제출	통합하여 일시 제출

○ 시행일 : 1997년 6월 1일

## I. 배경

### ○ 재정자금 배정제도

- 편성된 세출예산을 세입상황 및 각 부처의 자금 소요를 보아 재정경제원 장관이 47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분하는 제도임.

### ○ 지금까지는 재정자금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 전 등 경비 성질별로 구분하여 배정함으로써

- 중앙관서장의 자금집행시 경직성을 유발하고  
- 각 부처는 충분한 자금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요구를 하는 관행 초래

###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금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예산회계법 제57조(지출한도액 통지) 제3항 재정경제원은 월별 자금계획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통지

## II. 현행 배정제도 및 문제점

### 1. 현행 배정제도

#### ○ 배정절차

- 매월 자금소요액을 당해월 5일까지 받아서 세입 상황 및 해당부처 세출진도 등을 보아 요구액을 조정하여 배정

#### ○ 배정 횟수 및 시기

- 정해진 횟수나 시기에 제한은 없으나 통상 월 3

~4회 세입상황 및 부처의 수요에 따라 배정

•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매월 1일 자동 배정하고  
일반경비는 세입 범위내에서 적절히 배정

#### ○ 배정방식

- 중앙관서별로 소요자금을 예산의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배정

• 기능별 분류 :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교부금 등 6개로 구분

• 경비성질별 분류 :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 8개로 분류

### 2. 문제점

#### ○ 재정자금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배정함으로써

- 중앙관서장의 자금집행에 경직성을 초래하고 여유 있는 자금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자금 요구를 하게 됨.

- 즉 일부 비목에 자금이 남아 있는데도 다른 비목에 부족하여 추가로 자금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기본경비를 매월초에 자동배정함에 따라 봉급 지급기일이 25일일 경우 재정자금이 20여일간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 1997년처럼 세입이 부진한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재정지출을 위한 자금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또한 위의 두 가지 요인은 과도한 지출관조고로 연결되어 재정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 초래

〈각 부처별 보수 지급일 현황〉

	기 관 명
10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비서실, 경호실, 병무청 등
17일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포함)
20일	대법원, 중선위, 내무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25일	위의 각 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사용시기에 맞춰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재정자금의 사장을 방지
-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배정받은 자금 중 기본경비를 우선적으로 재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경비 배정제도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

○ 자금배정 시기의 정기화

- 매월 3회 : 3일, 13일, 22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배정)
- 자금배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로 각 부처 재정지출의 계획성 제고

○ 자금배정 관련 문서의 정비

-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지출관에게 자금을 재배정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통지(예산회계법 제57조 제4항)하기로 되어 있는
- 「재배정통지서」와 「자금배정요구서」를 통합·정비
- 문서의 양과 횟수를 줄이고 부처별 양식을 통일

### Ⅲ. 개선방안

#### 1. 기본방향

- 재정지출의 자율성 및 탄력성 제고
- 재정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여 자금운용 효율화
- 자금배정의 예측가능

#### 2. 개선내용

- 배정방식 개선
  - 성질별 구분 배정제도를 폐지해 중앙관서별 배정
  - 중앙관서의 장은 자율적인 판단으로 긴급한 자금 소요에 우선 지출이 가능해 자금의 효율적 활용 가능
  - 총액 배정을 하더라도 예산의 경비성질별, 분기별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지출은 할 수 없음.
  - 기본경비 자동 배정제도를 폐지하여 보수 지급시기에 일반경비와 함께 배정

#### 3. 기대효과

- 중앙관서장의 자금집행에 대한 자율성 확대로 자금배분의 효율성 및 탄력성 제고
- 지출관잔고의 최소화로 재정자금의 단기적인 사장화 방지
- 자금 배정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로 중앙관서장의 계획적 자금 집행을 유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소비세제과에서 5월 29일에 발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의 내용입니다.

- 1997년 5월 31일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 이는 지난 1996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개선·보완해 나가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CD롬)의 범위

- 1996년말 시행령 개정시 도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은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잡지 등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담은 매체로 정함.
- \* 음반이나 비디오물(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은 제외

###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과세범위 조정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폐기물의 배출장소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되고 있음.
- \* 1996년 2월 24일 이전까지는 폐기물의 유해 정도에 따라 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일부)과 특정폐기물로 구분
- 현재는 종전 폐기물관리법상 구분기준에 따라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전환
- 폐기물관리법과 체계를 일치시키는 한편
-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을 지원
- \*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을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의 경우 당해 시설투자분에 대한 부

가가치세(시설투자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어 그만큼 원가가 절감됨.

### 3. 다단계 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 다단계 판매원은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다단계 판매회사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음.
- 당해 후원수당은 하위판매원을 교육하고 판매조직을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자유직업소득)로 보아
  - 부가가치세는 현재와 같이 면제하되
    - 현재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 소득세는 1% 원천징수후 사업소득세를 과세
    - 현재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세원관리가 용이해짐.

### 4. 축협조합의 사료포장재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 1997년 7월부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
- 축협조합이 판매하는 배합사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것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전환되는바
- 사료포장재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여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포장재」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참고〉

#### 가. 전자출판물 관련

##### ○ 도서·음반 등에 대한 과세체계

	과세여부
도서	면세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CD롬	과세
도서에 부수된 오디오 테이프	면세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 테이프	과세
도서에 부수된 CD롬	과세(종전)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롬	면세(개정)

##### ○ 관련규정

-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문자 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기타간행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된 간행물

#### 나. 폐기물 관련

##### ○ 폐기물의 구분 기준

- 생활폐기물 : 가정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 이상 또는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부가규칙	폐기물관리법	
	종전	개정(1996. 2)
일반폐기물 : 면세	일반폐기물 -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 : 과세	특정폐기물	

- 생활계폐기물 : 음식물 등 생활계 폐기물
- 일반폐기물 : 유기물·무기물 등 산업활동과정에서 발생
- 건설폐기물 : 전자재 등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 : 폐유·폐산 등 중금속 함유물

다. 다단계 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

○ 다단계 판매원의 정의

- 여러 단계 이상의 가입구조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에 가입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자
- \* 가입구조는 여러 단계로 되어 있으나 물건은 판매회사로부터 판매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3단계로 이루어짐.
- \* 다단계 판매방식은 판매조직이 합법화되어 있고 정상적인 판매방식을 취하는 점에서 피라미드 판매와 다

름.

- 다단계 판매원은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고 있음.

○ 후원수당에 대한 과세체계

성격	부가세	원천징수	소득세
인적 용역대가 판매장려금	면세 과세제외	1% 징수 -	자유직업 소득(소득률 40%) 소매업 소득(소득률 8%)

○ 다단계 판매회사의 후원수당 지급기준

- 후원수당은 판매실적(하위판매원 판매분 포함)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적용
- 후원수당의 산정기준(예 : 암웨이사(社))
  - 21% : 1천만원 이상
  - 18% : 680만원 이상
  - 15% : 400만원 이상
  - 12% : 240만원 이상
  - 9% : 120만원 이상
  - 6% : 60만원 이상
  - 3% : 20만원 이상

## 1997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안)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산업관세과에서 5월 29일에 발표한 「1997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안)」의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 현재 시행중인 할당관세의 적용시한이 6월말로 종료되고 수입개방 등에 따라 조정관세 적용수요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 1997년 하반기에 적용할 탄력관세(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경제장관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할당관세 80개 품목
  - 조정관세 15개 품목

### I. 할당관세 운용

-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 가격 및 수급의 안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 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 기본세율에서 40% 포인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임.

### 1. 기본방향

-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관련품목 및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산업활동에 긴요한 기초원자재로서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하여 무세 내지는 최저세율을 적용
- 서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가격안정도모 및 원재료 수급으로 해소

## 2. 운용내용

(단위 : 억원)

운용목적	1997 상반기	1997 하반기	증감	1997 하반기 관세 지원액
1. 물가안정 및 물자수급원할	22	21	-1	639
2. 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58	52	-6	1,798
기초원자재	30	20	-10	1,168
중소기업	15	17	2	326
농·축산업	13	15	2	303
3. 세율 불균형 시정	7	7	-	73
합 계	87	80	-7	2,510 (2,049)

주: ( ) 안은 1997년 상반기 관세지원액임.

## 3. 1997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현황

(단위 : 개)

적용사유	적용품목		품목수
	기존	신규	
1. 물가안정 및 물자 수급원할	원료치즈, 맥주맥, 맥아, 대두, 조주정, 프로판·부탄, 이염화 에틸렌, 페로니켈, 전자식계동장치, 시멘트, 슬랩, 선재, 규소 전기강, 배어링강, 니켈괴, SF가스, 전극, 단판, 메니옥칩	메탄올, 핫코일	21
2. 산업의 경쟁력지원			52
기초원자재	천연인산칼슘, 철광석, 망간광, 동광, 연광, 아연광, 유연탄, 납사용원유, 염화칼륨, 천연고무, 원목, 양모, 원면, 선철, 고철, 동설, 산화니켈, 알미늄설, 원피, 조동		20
중소기업	인조커런덤, 8-아미놀, 아세토아닐리드, 염료, 면사, 페로실리콘, 빌레트, 냉간단조용선재, 알미늄괴, 알미늄선, 알미늄판·대, 코발트분, 전구용유리벌브, 재생필라멘트사, 스테이플섬유, 광약유리	생사	17
농·축산업	유장분말(사료), 옥수수(사료), 밀(사료), 수수, 호밀, 알팔파, 결보리, 유지, 밀기울, 채종박, 요소, 농약원제, 바다다	무수암모니아, 질산칼슘	15
3. 세율 불균형 시정	유채유, 토마토펜이스트, 오산화바나듐, 텅스텐산염, 카제인산염, 항공기엔진, 제어기기		7
합 계			80
		75	5

주: 현 운용품목 중 부처에서 요청하지 않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알루미늄광, 옥수수(가공용), 디젤엔진(발전기용) 등 12개품목은 제외

## II. 조정관세 운용

-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 특정품목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 관세율을 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임.

### 1. 운용내용

-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개방되는 수산물(냉

동민어)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경쟁력 취약품목(의류·자전거 등 14개)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새로이 적용

- \* 조정관세적용 15개 품목
- 1997년 7월 1일 수입개방되어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민어
-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건의한 자전거 및 등 부품(차체·포크)
-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목제가구 등 13개 품목

### 〈참고 1〉 할당관세 적용물품 신·구세율 대비표

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단위 : %)

번호	관세율 표번호	품 명	세 율			
			기본(잠정)	현행	개정	증감
1	0404	유장분말(사료용)	20	7	7	-
2	0406	치 즈(원료용)	40	20	20	-
3	0714	매 니 옥(주정용)	20	10	10	-
4	1001	밀(사료용)	5(3)	0	0	-
5	1002	호 밀(사료용)	3	0	0	-
6	1003	맥주맥	30	5	5	-
7	1003	겉 보 리(사료용)	5	1	1	-
8	1005	옥 수 수(사료용)	5(3)	0	0	-
9	1007	수 수(사료용)	3	0	0	-
10	1107	맥 아	30	10	10	-
11	1201	대 두	5(3)	1	1	-
12	1214	알 팔 파(사료용)	20	1	1	-
13	1514	유 채 유	30	15	15	-
14	1518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8	3	3	-

〈참고 1〉의 계속

(단위 : %)

번호	관세율 표번호	품 명	세 율			
			기본(잠정)	현행	개정	증감
15	2002	토마토페이스트	8	5	5	-
16	2207	조 주 정	30	10	10	-
17	2302	밀 기 율	5	2.5	2.5	-
18	2306	채 종 박(사료용)	5	2	2	-
19	2510	천연인산칼슘	1	0	0	-
20	2523	시 멘 트	5	1	1	-
21	2601	철 광	1	0	0	-
22	2602	망 간 광	1	0	0	-
23	2603	등 광	1	0	0	-
24	2607	연 광	1	0	0	-
25	2608	아 연 광	1	0	0	-
26	2701	유 연 탄	1	0	0	-
27	2709	원 유(나프타제조용)	5	1	1	-
28	2711	프로판및부탄	5	1	1	-
29	2812	설파핵사플로라이드	8	4	4	-
30	2814	무수암모니아	5(2)	(신규)	1	-1
31	2818	인조커런덤	5	2	2	-
32	2825	오산화바나듐	8	3	2	-1
33	2841	텅스텐산염	8	3	3	-
34	2903	이염화에틸렌	5	3	3	-
35	2905	메 탄 율(메틸알콜)	5	(신규)	3	-2
36	2922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과그염(염료제조용)	8	4	4	-
37	2924	아세트 아세트아닐리드및 그 유도체(안료제조용)	8	5	5	-
38	3102	요 소	8	4	4	-
39	3102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및 혼합물	8	(신규)	4	-4
40	3104	염화칼륨	1	0	0	-
41	3204	염 료	8	6	6	-
42	3501	카세인산염(커피크리머용)	20	5	7	+2
43	4001	천연고무	2	0	0	-

〈참고 1〉의 계속

(단위 : %)

번호	관세율 표번호	품 명	세 율			
			기본(잠정)	현행	개정	증감
44	4101, 4102, 4103	원 피	3	1	1	-
45	4403	원 목	2	0	0	-
46	4408	합판용단판	5	2.5	2.5	-
47	5002	생 사	8	(신규)	2	-6
48	5101, 5102, 5103, 5104, 5105	양 모	2	0	0	-
49	5201, 5202, 5203	원 면	2	0	0	-
50	5205	면 사	8	2	2	-
51	5403	재생필라멘트사	8	2	2	-
52	5504	재생스테이플섬유	8	2	2	-
53	7011	유리벌브(전등용)	8	4	4	-
54	7014	광학유리	8	5	5	-
55	7201	비합금선철	2	0	0	-
56	7202	페로실리콘	5	2.5	2.5	-
57	7202	페로니켈	5	2.5	3	0.5
58	7204	고 철	2(1)	0	0	-
59	7207	슬 랩	5	3	2	-1
60	7207, 7224	빌 레 트	5	2	2	-
61	7208	햇 코 일	8	(신규)	4	-4
62	7213, 7227	선 재	8	4	4	-
63	7225, 7226	규소전기강판	8	4	4	-

〈참고 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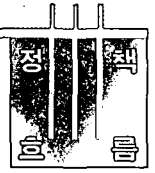
(단위 : %)

번호	관세율 표번호	품 명	세 율			
			기본(잠정)	현행	개정	증감
64	7229	냉간단조용선재	8	4	4	-
65	7304	베어링강	8	4	4	-
66	7402	조 동	3	1	1	-
67	7404	동 설	1	0	0	-
68	7501	산화니켈	2	0	0	-
69	7502	니켈의괴	5	3	3	-
70	7601	알루미늄의괴	5	3	3	-
71	7602	알루미늄설	1	0	0	-
72	7605	알루미늄선	8	4	4	-
73	7606	알루미늄의 판·쉬트·대	8	6	6	-
74	8105	코발트분	5	2.5	2.5	-
75	8411	항공기엔진 및 부분품	5	1	1	-
76	8545	전 극(노용)	8	4	4	-
77	8708	ABS브레이크(대형차용)	8	4	4	-
78	9032	항공기용제어기기	8	3	3	-
79	2825 외	농약원제	8	2	2	-

나.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단위 : %)

번호	관세율 표번호	품 명	세 율			
			기본(잠정)	현행	개정	증감
80	0803	바 나 나	30	70	70	-



〈참고 2〉 조정관세 적용물품 신·구세율 대비표

(단위 : %)

번호	관세율 표번호	품 명	세 율		
			기본(현행)	개정	증감
1	0303	냉동민어	10	100	90
2	6103	남자용 바지(면제)	8	13	5
3	6104	여자용 바지(면제)	8	13	5
4	6109	티 셔츠(면제)	8	13	5
5	6110	스웨터류	8	13	5
6	6111	유아용 의류(면제)	8	13	5
7	6201	남자용코트·재킷류	8	13	5
8	6202	여자용코트·재킷류	8	13	5
9	6204	여자용재킷 및 블레이저	8	13	5
10	6205	남자용셔츠	8	13	5
11	6212	브래지어	8	13	5
12	6505	운동모자	8	13	5
13	8516	가정용전열기기 (커피메이커, 토스터)	8	16	8
14	8712	자전거(일반용)	8	19	11
	8714	자전거부품(차체·포크)	8	17	9
15	9403	목제가구(문갑, 장롱 등)	8	15	7

## 1998년 예산 요구현황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예산실 예산총괄과에서 6월 6일에 발표한 「1998년 예산 요구현황」의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 5월 31일까지 48개 전 중앙관서가 요구한 199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4조 2,602억원으로 1997 예산에 비해 24.7% 증가
  - \* 67조 5,786억원→84조 2,602억원(16조 6,816억원 증가)
- 일반회계와 재정용자특별회계를 합친 예산규모는 93조 6,216억원으로 31.1% 증가
  - \* 71조 4,006억원→93조 6,216억원(22조 2,210억원 증가)
- 최근 들어 예산요구 증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

〈연차별 요구규모 증가율 추이〉

(단위 : %)

	1996	1997	1998
일반회계	35.3	30.1	24.7
일반+재특	44.1	38.3	31.1

- 인건비,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는 11.3% 증액 요구하였으나
  - 사업비 요구는 52.5%로 높은 수준(일반+재특 기준)
  - \* 34조 3,673억원→52조 4,138억원(18조 465억원 증가)
  - \* 1997 예산의 경우 사업비를 66.7%(19.7조) 증액 요구하였고, 실제 반영된 예산증가율은 16.5%(4조 9천억원)임.
- 예산요구 특징으로 규모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각 부처가 과도한 예산요구를 자제하는 가운데,
  - SOC, 교육, 농어촌, 중소기업, 국민복지 등 이미 확정된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요구가 크게 증가

- 부처별 일반회계 요구를 살펴보면
  - 50% 이상 증액요구한 부처는 환경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11개로 작년에 비해 5개가 감소한 반면
  - 20% 이하의 증액을 요구한 부처는 재정경제원,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로 작년에 비해 7개가 증가
- 22개 특별회계의 예산요구는 64조 6천억원으로 1997 예산대비 27.4%(13조 9천억원)가 증가한 규모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148조 8천억원으로 1997 예산대비 25.8%(30조 6천억원) 증가한 수준
- 재정경제원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심의하여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법정기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임.

### I. 1998 예산 요구개요

- 1998년 일반회계의 예산요구 규모는 84조 2,602억원으로 1997 예산대비 24.7%(16.7조 원) 증가
- 일반회계와 재특회계를 합친 1998 예산 요구액은 93조 6,216억원으로 1997 예산대비 31.1%(22조 2천억원) 증가
- 최근 들어 예산요구 증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

〈연차별 요구규모 증가율 추이〉

(단위 : %)

	1994	1995	1996	1997	1998
일반회계	40.3	28.8	35.3	30.1	24.7
일반+재특	39.7	36.4	44.1	38.3	31.1

- 인건비, 방위비, 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요구는 52.5%(18조원)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
- \* 1997 예산의 경우 사업비는 66.7%(19조 7천억원) 증액 요구하였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증가율은 16.5%(4조 9천억원)에 불과

〈경비 성질별 요구내역(일반+재특회계)〉

(단위 : 순계기준, 억원, %)

	1997예산	1998요구	증가		'97요구 증가율
			비율	증가율	
합 계	714,006	936,216	222,210	31.1	38.3
인건비	85,678	90,158	4,480	5.2	8.6
방위비	143,505	163,016	19,511	13.6	17.3
교부금·예비비	141,150	158,904	17,754	12.6	12.5
사업비	343,673	524,138	180,465	52.5	66.7

## II. 부처별·회계별 요구규모

- 50% 이상 요구한 부처는 11개로서 작년에 비해 5개 감소
- 50% 이상 : 환경부 등 11개(1997년 16개)
- 20~50% : 보건복지부 등 20개(1997년 22개)
- 10~20% : 법무부 등 9개(1997년 7개)
- 10% 이하 : 통계청 등 8개(1997년 3개)
  
- 재정음자특별회계를 포함한 22개 특별회계의 예산요구는 64조 6천억원으로 1997 예산대비 27.4% 증가

<특별회계 요구증가율 추이>

(단위 : %)

1994	1995	1996	1997	1998
27.4	54.9	16.7	34.0	27.4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148조 8천억원으로 1997 예산대비 25.8%(30조 6천억원) 증액

<총예산 요구증가율 추이>

(단위 : %)

1994	1995	1996	1997	1998
35.4	39.9	27.3	31.7	25.8

(단위 : 억원, %)

	'97예산	'98요구	증감액	비 고	
				비율	
일반회계	675,786	842,602	166,816	24.7	48개 부처
특별회계	506,922	645,732	138,810	27.4	22개 특별회계
총규모	1,182,708	1,488,334	305,626	25.8	1997요구사 31.7%

## III. 1998 요구의 주요내용

### 1. SOC 분야

(단위 : 억원)

	'97 예산	'98 요구
5대 국책사업 지원		
· 인천국제공항 건설	3,399	7,592
· 신항만 건설	1,724	4,022
· 광양항 건설	416	320
· 아산항 건설	562	658
· 경부고속철도 건설	4,766	5,914
대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원		
· 광역철도 건설	600	2,640
· 광역도로 건설(수도권)	(신규)	1,860
·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건설 등	(신규)	457
기타 SOC 지원		
· 일반국도건설 지원	14,594	16,862
· 고속도로건설 지원	12,205	14,646
· 용담댐 건설	1,821	3,013
· 지하철 국고지원 확대	6,496	9,890
· 산업지원 국도 2차 건설	(신규)	1,709
· 천안-부산 전철화	(신규)	344
·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신규)	405

### 2. 교육 : 62조원 교육투자계획

(단위 : 억원)

	'97 예산	'98 요구
지방교육지원을 위한 증액교부금	1,800	6,808
국·공·사립대학 실험기자재 확충	2,480	3,938
실업계 고교시설 확충 및 내실화	1,022	2,786
학술연구조성 지원	1,200	2,000
시도 교육청 자구노력 지원	(신규)	1,000
학교교실 조도 개선사업	(신규)	800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신규)	200

### 3. 농수산

(단위 : 억원)

	'97 예산	'98 요구
42조원 농어촌 투자계획		
• 경지정리	8,322	10,178
• 농업용수개발	8,082	11,416
•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4,374	5,815
• 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	2,769	4,501
• 새만금 방조제	1,531	2,100
•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272	828
농어민 소득보상 등		
•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원	945	9,008
• 양곡수매사업 지원	미지원	5,984
• 비료계정 적자 보전	2,841	4,188

### 4.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단위 : 억원)

	'97 예산	'98 요구
중소기업 등 산업지원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8,056	14,917
• 산업기술자금·산업기반자금	9,041	15,072
• 신용보증기금 지원	6,100	10,000
• 수출보험기금 지원	1,800	3,000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1,135	2,538
• 외국인 투자유치(공단조성) 지원	212	1,012
• 지역신용보증조합 지원	(신규)	700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대책 관련 지원		
• 벤처기업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신규)	730
•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기반조성	(신규)	245
•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지원	(신규)	140
과학기술 및 정보화 촉진		
• 특정 연구개발 지원	3,140	4,354
• S/W 지원센터 등 S/W산업 지원	170	700
• 멀티미디어산업 및 설비 현대화	531	470
• 기초과학연구사업 지원	1,097	1,547
• 중점 국가연구개발	(신규)	500

### 5. 사회복지

(단위 : 억원)

	'97 예산	'98 요구
국민복지구상 관련지원		
• 의료보험·의료보호(급여기간 270→300일 등)	15,481	21,009
• 생계보호(최저생계비 93%→100% 제고)	3,658	4,273
• 노령수당 인상(35→40천원/월)	808	896
•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600	1,200
• 암질환 관리 및 암센터 건립	224	779
•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	(신규)	1,385
근로자 생활 및 고용안정대책 관련 지원		
• 자녀학자금 융자, 고용안정, 직장보육시설 등	295	1,293
•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1,000	2,000

### 6. 환경개선

(단위 : 억원)

	'97 예산	'98 요구
4대강 등 수질개선대책 관련 지원		
•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확충	877	1,631
• 공단 하폐수처리시설 설치	196	874
• 기타 하수 및 오폐수시설 확충사업	1,744	2,169
기타 환경부문		
• 지방상수도 확충 개선	2,350	3,229
•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624	1,149
•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신규)	300

### 7. 기타

(단위 : 억원)

	'97 예산	'98 요구
북한 이탈주민 관리	33	122
자유 의 집 및 통일교육장 조성	68	123
남북협력기금 지원	1,000	2,000
정당 보조금 지원	504	819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583

〈참고 1〉 1998 예산 부처별 요구현황(일반회계)

(단위 : 억원, %)

	'97예산	'98요구	증 가		'97요구 증가율
				비율	
대 통 령 실	364	395	31	8.6	16.0
대 통 령 경 호 실	432	399	-33	-7.5	5.5
국 회	1,813	1,915	102	5.6	24.7
대 법 원	3,101	3,920	819	26.4	28.3
국가안전보장회의	2	2	-	11.0	12.9
국가안전기획부	2,332	2,561	229	9.8	18.0
민주평통자문회의	110	137	27	25.1	33.9
감 사 원	406	455	49	12.0	14.2
헌 법 재 판 소	91	103	12	12.9	21.2
중앙선거관리위	1,713	2,191	478	27.9	27.0
국 무 총 리 실	198	252	54	27.1	14.5
재 정 경 제 원	3,644	3,960	316	8.7	35.4
통 일 원	1,463	2,673	1,210	82.7	87.2
외 무 부	4,675	7,669	2,994	64.1	59.4
내 무 부	72,671	83,542	10,871	15.0	17.2
법 무 부	8,175	9,726	1,551	19.0	24.2
국 방 부	137,865	155,098	17,233	12.5	16.7
교 육 부	122,825	152,726	29,901	24.3	23.3
문 화 체 육 부	6,451	10,333	3,882	60.2	90.2
농 립 부	29,696	59,133	29,437	99.1	66.2
통 상 산 업 부	9,328	15,423	6,095	65.3	78.3
정 보 통 신 부 <sup>1)</sup>	28,530	36,255	7,725	27.1	33.2
환 경 부 <sup>1)</sup>	7,921	13,998	6,077	76.7	169.5

주 : 1) 특별회계 부처로 해당 특별회계 세출규모임.

〈참고 1〉의 계속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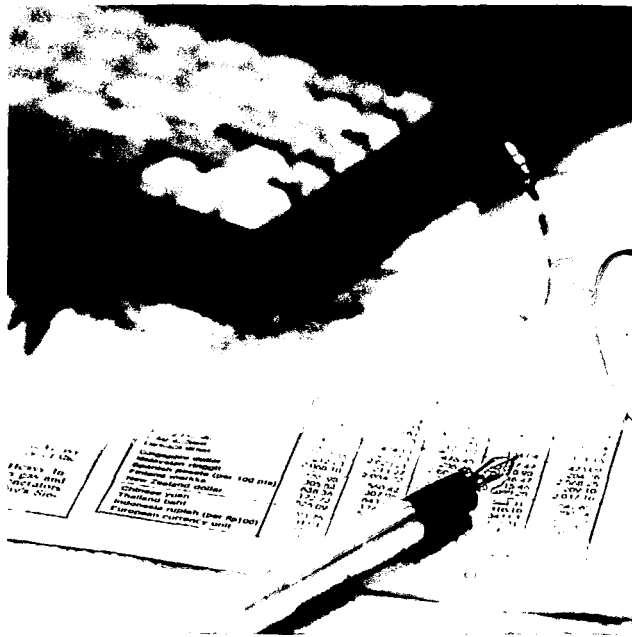
	'97예산	'98요구	증 가		'97요구 증가율
				비율	
보 건 복 지 부	28,512	41,174	12,662	44.4	61.9
노 동 부	3,172	5,873	2,701	85.1	71.7
건 설 교 통 부	83,576	115,058	31,482	37.7	45.5
해 양 수 산 부	11,833	17,938	6,105	51.6	143.1
총 무 처	6,420	7,546	1,126	17.5	26.5
과 학 기 술 처	9,531	13,390	3,859	40.5	30.9
공 보 처	586	831	245	42.0	47.6
정무장관(1)실	34	37	3	9.0	32.1
정무장관(2)실	192	270	78	40.7	51.3
법 제 처	93	123	30	33.0	42.5
국 가 보 훈 처	10,037	12,459	2,422	24.1	24.0
공정거래위원회	163	183	20	12.3	61.8
조 달 청 <sup>1)</sup>	1,370	1,261	-109	-7.9	15.0
국 세 청	5,986	7,300	1,314	21.9	21.3
관 세 청	1,627	2,075	448	27.6	38.5
통 계 청	563	573	10	1.8	35.2
경 찰 청	33,678	38,999	5,321	15.8	28.2
병 무 청	1,599	2,025	426	26.6	31.4
농 촌 진 흥 청	2,355	2,957	602	25.6	34.6
산 림 청	2,228	3,333	1,105	49.7	86.1
중 소 기 업 청	8,766	16,545	7,779	88.7	111.3
특 허 청 <sup>1)</sup>	694	1,258	564	81.2	60.7
철 도 청 <sup>1)</sup>	40,852	47,118	6,266	15.3	39.7
해 양 경 찰 청	2,498	4,583	2,085	83.5	-
기 상 청	501	693	192	38.5	32.8

주 : 1) 특별회계 부처로 해당 특별회계 세출규모임.

〈참고 2〉 1998 특별회계 예산 요구현황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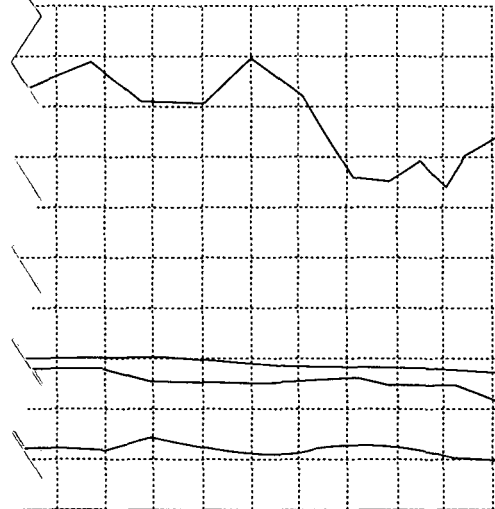
	'97예산	'98예산	증 가		소관부처
				비율	
재 정 용 자	106,486	162,181	55,695	52.3	재경원 등 17부처
교 통 시 설	82,822	113,036	30,214	36.5	건교부, 해양부
국 유 재 산 관 리	17,010	15,732	-1,278	-7.5	재경원 등 15부처
농 어 촌 구 조 개 선	59,260	75,115	15,855	26.8	농림부 등 4부처
농 특 세 관 리	15,000	17,024	2,024	13.5	농림부 등 9부처
등 기	1,137	1,593	456	40.0	대 법 원
지 방 양 여 금	31,891	31,050	-841	-2.6	내 무 부
교 도 작 업	345	360	15	4.3	법 무 부
군 인 연 금	9,573	10,424	851	8.9	국 방 부
지 방 교 육 양 여 금	52,718	58,720	6,002	11.4	교 육 부
교 육 환 경 개 선	7,000	7,000	-	-	교 육 부
에 너 지 및 지 원 사 업	19,835	30,141	10,306	52.0	통 상 산 업 부
환 경 개 선	7,921	13,998	6,077	76.7	환 경 부
국 립 의 료 원	547	585	38	6.8	보 건 복 지 부
토 지 관 리 및 지 역 개 발	3,480	4,053	573	16.5	건 설 교 통 부
체 신 보 험	1,783	1,918	135	7.6	정 보 통 신 부
자 동 차 교 통 관 리	942	1,149	207	21.9	경 찰 청
특 허 관 리	694	1,258	564	81.2	특 허 청
양 곡 관 리	17,725	15,761	-1,964	-11.1	농 립 부
철 도 사 업	40,852	47,118	6,266	15.3	철 도 청
통 신 사 업	28,530	36,255	7,725	27.1	정 보 통 신 부
조 달 사 업	1,370	1,261	-109	-7.9	조 달 청



# 재정통계

## 특별소비세 관련 통계(II)

- ① 특별소비세 과세액 상승률 및 실적 추수
- ②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별 실적 추수
- ③ 특별소비세 주요 품목별 추수
- ④ 특별소비세 과세액 및 실적 추수
- ⑤ 특별소비세 과세액 추수 추이 : 지역별 추수
- ⑥ 특별소비세 과세액 추수 추이 : 업종별 추수
- ⑦ 특별소비세 과세액 추수 추이
- ⑧ 특별소비세 과세액 추수 추이



1. 특별소비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단위: 명, 백만원, %)

	납세자수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부과액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77	4,437	94,061	101,252	99,300	99,865	8	1,379	107.6	106.2
1978	4,450	281,426	329,275	333,102	327,021	136	2,118	117.2	116.2
1979	4,912	459,526	504,550	499,227	484,627	92	19,831	109.8	105.5
1980	5,378	613,117	610,482	613,090	582,471	117	27,894	99.6	95.0
1981	5,966	746,776	671,038	663,580	665,204	59	5,775	89.9	89.1
1982	8,598	673,077	670,665	666,441	664,874	1,824	3,967	99.6	98.8
1983	9,083	788,376	797,741	795,082	793,315	702	3,724	101.2	100.6
1984	9,392	845,278	902,270	900,157	898,110	662	3,498	106.7	106.3
1985	9,650	984,934	985,686	986,063	980,807	457	4,422	100.1	99.6
1986	10,341	1,041,891	1,092,879	1,094,254	1,085,500	857	6,522	104.9	104.2
1987	7,284	1,247,579	1,195,158	1,222,663	1,189,665	1,856	3,637	95.8	95.4
1988	7,436	1,308,587	1,335,571	1,336,669	1,333,176	695	1,700	102.1	101.9
1989	3,935	1,140,112	1,262,708	1,414,985	1,256,966	1,434	4,308	110.8	110.2
1990	4,689	1,449,016	1,915,661	1,782,960	1,911,791	1,347	2,523	132.2	131.9
1991	4,443	2,150,646	2,251,338	2,349,161	2,246,526	853	3,959	104.7	104.5
1992	4,376	2,852,738	3,073,650	2,949,114	3,068,615	720	4,315	107.7	107.6
1993	3,937	3,478,268	3,611,217	3,615,397	3,606,917	978	3,322	103.8	103.7
1994	3,988	2,352,600	2,455,924	2,595,194	2,445,573	873	9,478	104.4	104.0
1995	3,671	2,610,200	2,631,204	2,662,747	2,617,110	1,654	12,440	100.8	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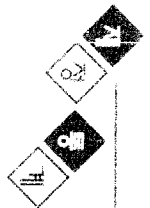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 특별소비세 주요품목 출고량

(단위: 대, 톤, 천병, kl)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승용차	사 탕	청량음료	휘발유	경 유
1983	985,311	359,704	1,442,095	104,463	401,283	1,839,039	608,248	5,528,042
1984	1,266,969	560,082	1,625,586	106,184	439,692	2,007,955	831,646	6,301,053
1985	1,310,228	567,957	1,145,600	127,596	434,814	2,009,551	1,103,043	7,505,400
1986	1,359,871	721,551	1,243,528	153,160	480,974	1,987,803	1,337,912	8,081,014
1987	1,650,635	88,723	1,446,489	232,427	499,277	2,080,523	1,605,647	7,926,858
1988	1,755,967	1,026,111	1,707,391	315,971	584,849	2,015,675	2,097,049	9,711,368
1989	1,837,835	889,831	2,048,078	470,077	598,677	2,263,174	2,821,203	11,807,164
1990	1,728,077	595,644	1,798,588	538,574	588,877	2,378,581	3,588,319	12,432,707
1991	1,781,002	304,473	2,038,773	678,134	670,047	2,346,144	4,408,615	14,568,704
1992	1,790,047	108,413	2,019,094	737,603	676,318	2,512,920	5,433,696	17,782,390
1993	1,767,328	54,517	2,221,603	887,040	678,931	2,142,295	6,674,588	18,770,340
1994	2,033,682	1,239,599	2,205,138	1,054,548	740,114	2,611,614	7,864,626	18,840,025
1995	2,105,092	1,444,906	2,011,289	980,267	747,869	2,581,600	9,348,372	21,216,14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3. 특별소비세 주요품목 부과

(단위: 명, 백만원)

		합계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승용차	사탕	청량음료	휘발유	경유	기타	수입분
1983	인원	9,068	1	1	7	4	4	17	3	4	9,027	-
	세액	795,082	48,699	15,925	73,970	59,992	58,472	44,660	183,552	102,456	179,962	27,394
1984	인원	9,396	3	3	8	4	3	20	4	4	9,347	-
	세액	900,403	61,857	25,937	76,809	73,023	53,818	49,450	207,413	118,991	201,133	31,972
1985	인원	9,656	3		8	4	3	22	4	4	9,608	-
	세액	986,063	68,260	29,500	53,525	88,568	49,339	52,817	271,188	123,449	214,522	34,895
1986	인원	10,345	3	3	8	4	3	22	4	4	10,294	-
	세액	1,094,254	72,214	41,034	56,287	105,476	54,579	56,748	304,917	113,496	251,865	37,638
1987	인원	7,288	3	3	8	4	3	22	4	4	7,237	-
	세액	1,222,663	75,340	46,483	56,602	149,306	54,040	55,318	351,319	101,350	273,628	59,277
1988	인원	7,436	4	3	8	4	3	22	4	4	7,384	-
	세액	1,336,669	70,221	52,522	63,039	209,187	47,529	51,645	360,391	105,413	323,948	52,774
1989	인원	3,935	3	3	9	4	3	22	4	4	3,883	-
	세액	1,414,985	60,511	30,249	51,939	312,672	24,068	39,762	372,270	118,531	341,443	63,540
1990	인원	4,689	8	4	17	5	3	25	5	6	4,616	-
	세액	1,782,960	68,029	25,483	61,639	418,853	27,357	44,131	457,373	124,828	426,169	129,098
1991	인원	4,443	7	6	15	6	3	26	5	△5	4,375	-
	세액	2,349,161	94,050	13,802	83,489	504,297	28,193	48,749	779,895	155,680	527,897	113,109
1992	인원	4,376	8	5	19	6	3	25	5	△5	4,305	-
	세액	2,949,114	113,006	4,882	102,663	547,211	29,369	50,875	1,260,534	200,767	527,775	112,032
1993	인원	3,937	9	5	29	6	3	26	5	△5	3,854	-
	세액	3,615,397	131,543	2,647	123,888	654,234	30,125	48,405	1,727,840	237,451	533,777	125,487
1994	인원	3,988	8	6	30	6	3	29	5	△5	3,901	-
	세액	2,595,194	161,475	50,841	139,554	937,251	33,029	60,946	200,636	28,423	725,104	257,935
1995	인원	3,671	6	5	20	6	4	31	-	-	3,599	-
	세액	2,662,748	126,486	82,702	116,549	1,019,133	36,299	63,813	-	-	860,873	356,893

주: 1. 휘발유, 경유는 1994년 1월 1일 반출분부터 교통세로 전환

2. 인원란의 △표시는 타업종 겸업자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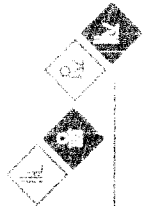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4.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단위: 백만원)

	합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1977	99,195	2,362	28,724	22,529	44,463	-	1,116	-
1978	324,177	8,939	117,985	69,243	125,228	-	2,782	-
1979	485,754	10,398	168,795	85,090	218,312	-	3,160	-
1980	606,250	9,780	112,833	109,613	370,765	-	3,260	-
1981	652,376	11,434	144,950	131,018	361,423	-	3,550	-
1982	653,274	12,224	167,784	149,885	306,362	-	4,464	12,554
1983	767,688	14,761	245,587	171,285	315,695	-	4,748	15,612
1984	868,431	16,905	280,367	186,919	362,408	-	5,191	16,641
1985	951,167	18,067	280,265	196,653	433,713	-	5,911	16,558
1986	1,056,617	20,155	329,260	223,350	457,889	-	7,065	18,898
1987	1,163,388	20,692	412,128	210,477	492,855	-	8,663	18,573
1988	1,284,001	23,000	544,943	187,489	498,466	-	11,049	19,054
1989	1,351,445	19,998	667,656	116,714	508,008	-	16,988	22,081
1990	1,653,862	23,162	854,098	134,579	600,846	-	17,694	23,483
1991	2,236,052	24,251	1,055,121	152,504	957,438	-	18,849	27,889
1992	2,837,082	26,891	1,100,932	166,031	1,489,619	-	22,360	31,249
1993	3,489,910	33,593	1,242,831	167,227	1,993,987	-	21,866	30,406
1994	2,337,259	46,371	1,684,041	200,420	335,208	-	24,799	46,420
1995	2,305,855	271,856	593,987	198,513	4,275	1,149,714	29,145	58,365

주 : 1995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의 종구분이 바뀜.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특별소비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분

(단위: 건, 백만원)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77	9	-	9	8	2	4	2	-	1
1978	85	1	84	84	19	61	4	4	1
1979	43	1	42	42	12	22	8	168	1
1980	16	1	15	16	8	6	2	5	-
1981	19	-	19	14	4	10	-	-	5
1982	85	5	80	74	15	47	12	50	11
1983	62	11	51	57	21	27	9	39	5
1984	38	5	33	37	20	15	2	3	1
1985	29	1	28	19	8	10	1	-	10
1986	46	10	36	44	25	19	-	-	2
1987	14	2	12	14	6	7	1	5	-
1988	1	-	1	1	1	-	-	-	-
1989	3	-	3	3	3	-	-	-	-
1990	3	-	3	3	1	1	1	187	-
1991	4	-	4	4	1	3	-	-	-
1992	5	-	5	5	1	4	-	-	-
1993	6	-	6	6	3	3	-	-	-
1994	-	-	-	-	-	-	-	-	-
1995	4	-	4	4	-	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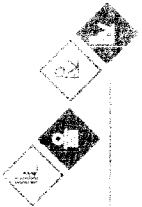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6. 특별소비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분

(단위: 건, 백만원)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결정취소		
1977	4	-	4	2	-	2	-	-	2
1978	147	2	145	134	5	126	3	2	13
1979	43	13	30	40	-	35	5	71	3
1980	12	3	9	12	1	10	1	0	-
1981	18	-	18	12	-	12	-	-	6
1982	50	6	44	43	4	33	6	48	7
1983	56	7	49	54	6	46	2	-	2
1984	21	2	19	21	5	16	-	-	-
1985	18	-	18	18	3	15	-	-	-
1986	22	-	22	21	1	20	-	-	1
1987	9	1	8	9	-	9	-	-	-
1988	6	-	6	6	-	5	1	17	-
1989	14	-	14	14	-	11	3	20	-
1990	4	-	4	4	1	3	-	-	-
1991	12	-	12	12	-	11	1	39	-
1992	2	-	2	2	-	2	-	-	-
1993	9	-	9	9	-	9	-	-	-
1994	2	-	2	2	-	2	-	-	-
1995	-	-	-	-	-	-	-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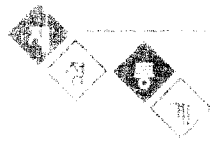


### 7. 특별소비세 세무소송

(단위: 건)

	처리대상건수			당년도종결건수				계류건수		
	계	전년도이월	당년도제기	계	국승	국패	기타	계	고등법원	대법원
1978	4	-	4	-	-	-	-	4	-	-
1979	29	4	25	29	2	25	2	-	-	-
1980	6	2	4	2	-	1	1	4	-	-
1981	7	4	3	3	-	3	-	4	-	-
1982	4	4	-	3	-	3	-	1	-	-
1983	12	1	11	2	1	-	1	10	-	-
1984	23	10	13	11	2	6	3	12	-	-
1985	20	12	8	7	4	3	-	13	-	-
1986	16	13	3	4	1	2	1	12	-	-
1987	20	12	8	9	7	2	-	11	7	4
1988	14	11	3	4	1	2	1	10	1	9
1989	17	10	7	7	2	5	-	10	9	1
1990	11	10	1	7	7	-	-	4	1	3
1991	6	4	2	3	3	-	-	3	1	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8. 특별소비세 감사실적

(단위: 건, 백만원)

	건수	세액
1978	61	28
1979	76	47
1980	75	9
1981	25	99
1982	64	99
1983	66	57
1984	42	65
1985	26	14
1986	57	120
1987	25	26
1988	29	325
1989	50	152
1990	71	394
1991	48	57
1992	25	97
1993	45	244
1994	29	447
1995	31	148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